

안전 25-03



정기교육·채용 시의 교육

#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 한국기술안전

K T S K O R E A T E C H N O L O G Y S A F E T Y

## 1. "용접 불티 튀어 화르르... 반복되는 참사 대책 절실"

2월 16일 소방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반안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 사망자는 6명, 연기 흡입 등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으며 경상자 중에는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불은 공사 현장 내 3개 건물 중 한 건물의 1층 내부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1층 공사 현장에서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하는 등 작업이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지상 1층 바닥 배관 구멍으로 연기가 유입된 뒤 화재가 급격히 확산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2023년 7월부터 건설현장에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시행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부산 기장군 호텔 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전국 공사 현장 1000개소 이상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와 △용접방화포·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 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등이며,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등도 추진한다. [경남신문= 김재경 기자]

## 2. "전국 위험기계·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안전점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월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 및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골조, 굴착, 도장 및 방수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안전신문= 박창환 기자]

## 3. "부산 공장에서 후진하던 지게차에 '쿵'...30대 노동자 사망"

2월 10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34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철강공장에서 A(40대)씨가 지게차에 물건을 싣고 후진하던 중 뒤에서 작업 중이던 B(30대)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관할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출처: 부산 뉴시스= 김민지 기자]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2.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2.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 KOSHA GUIDEG-185-2015(9.1 작업전 확인 사항) <5> 지게차 전용 작업구역내 보행자출입 금지, 가능한 한 보행자 통로 근처 작업금지 9.5 지게차 주행시 안전 <4> (가)유도자 배치 (나)후진 주행



## 안 전 교 육 실 시 명 단

순번	이름	서명	순번	이름	서명	순번	이름	서명
1			26			51		
2			27			52		
3			28			53		
4			29			54		
5			30			55		
6			31			56		
7			32			57		
8			33			58		
9			34			59		
10			35			60		
11			36			61		
12			37			62		
13			38			63		
14			39			64		
15			40			65		
16			41			66		
17			42			67		
18			43			68		
19			44			69		
20			45			70		
21			46			71		
22			47			72		
23			48			73		
24			49			74		
25			50			75		



# 채용 시의 교육

담당	부서장	대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번호	- (미 표기) 직 종
	전화번호	혈 액 형
	주 소	

교육내용	제1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
	제2편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제3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1
	제4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8
	제5편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제6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제7편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37
	제8편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43
	제9편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51
	제10편 사고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55
	제11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59

교육실시자	강사명 : 소속 및 직위 :
-------	-----------------

## 안전수칙 준수 서약



-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작업복은 항상 단정히 착용한다.
-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정해진 작업순서와 방법을 지키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물어본다.
- 운반작업은 정확한 자세 동작으로 한다.
- 전기기계·기구 사용 시 전선의 피복상태,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화기의 사용은 작업전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에게 허가를 받고 작업 후 에는 불씨 제거 상태를 필히 확인한다.
-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는 올바르게 착용한 후 작업한다.
- 작업 중에는 흡연 및 음주를 금한다.
-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작업현장을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유해·위험기계기구 작업전 방호장치 정상작동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 각종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규정을 능동적으로 준수한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지급받은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 후 작업을 하고 보호구를 미착용 하거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 년 월 일 시 부터 까지 (  신규입사자 8시간  동종업종경력자 4시간 )

☞ 동종업종경력자란 같은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

성 명 (서명 또는 인)

# 신입사원의 자세

## 1. 가벼운 기분으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배운다.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거나 마지못해서 배우는 것은 교육내용을 이해하거나 습득할 수 없다

주의력을 집중하여 진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 . .



## 2. 모르는 것은 알 때 까지 활발하게 질문한다.

공장, 직장에서는 배워서 익힌 것을 토대로 하여 작업을 하게 되므로 충분히 알지 못하면 사고를 일으키거나 불량품이 나오게 되어 자신은 물론 직장의 동료, 선배, 상사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므로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는 알 때까지 질문하여야 한다.

## 3. 배운 것은 모두 외운다.

직장에서는 배운 것은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단 배운 것은 모두 자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외우며 자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 4. 실제로 행하여 본후 시정을 받고 요점을 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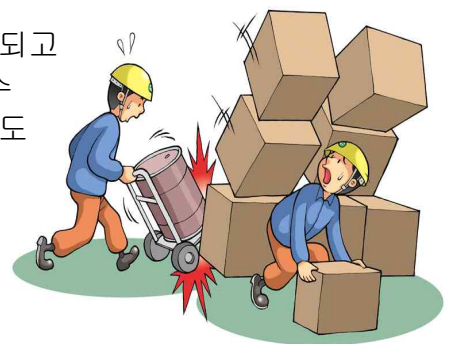
머리 속으로는 다 안 것 같으면서도 실제 작업을 하다보면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해보면서 선배나 상사로부터 모르는 것은 배우고 바르게 하는 방법을 빨리 외어 자기의 것으로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 5. 반복하며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작업에 숙달되기 위해서는 머리속에서만 그려보아서는 안되고 몇번이고 반복하여 연습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되며 설령 근로자에게 올바른 기능이 있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재해발생 후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재해의 98%가 근로자의 불안정한행동 또는 불안한상태 방치로 기인되며 이는 표준작업방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든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등 근심이 있어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좋지 않은 원인이 숨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제1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이란 ?

일반산업 사업장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장치, 기계, 재료 등의 손상, 파괴에 기인하는 잠재 위험성(hazard)을 배제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념을 말한다. 또, 기업 내 또는 기업간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한 제 활동을 총칭해서 말하는 일도 있다.[산업안전대사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설물, 기계, 장치, 재료 등의 손상과 파괴에 기인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목적은 직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지키며, 재해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실무노동용어사전]

### 2. 신입사원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이유는 ?

- 가. 새로운 작업장 또는 산업현장에서의 경험부족 때문
- 나. 작업환경과 일에 대해 낯설기 때문
- 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안전교육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
- 라.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열망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



### 3. 신입사원의 첫 출근과 마음가짐

3년간 재해 통계(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교육·훈련과 경험이 부족한 입사 6개월 미만 신입사원이 전체재해의 47~49% 점유하므로 신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구분	대상 근로자	재해자수(사망)	재해율	6개월 미만 재해자	산재보상/간접손실(단위:백만원)
2023년도	20,637,107	136,796(2,016)	0.66%	<b>64,601(47.22%)</b>	7,284,941/29,139,764
2022년도	20,173,615	130,348(2,223)	0.65%	<b>62,276(47.78%)</b>	6,686,486/26,745,944
2021년도	19,378,565	122,713(2,080)	0.63%	<b>60,493(49.30%)</b>	6,452,940/25,811,760

신입사원은 과거의 재해를 교훈삼아 동종 유사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안전작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직장생활은 학교생활과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고 또한 회사마다 다르므로 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빨리 터득하여 직장생활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이란 힘들고 지루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일은 우리의 생활을 즐겁고 풍족하게 하여 주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자기 생활이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생산작업에 종사할 때 원료나 재료의 취급방법, 기계 기구의 취급방법, 공구 사용방법, 도면을 보는 방법, 납기를 지키는 것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있다.

우리가 생산업무에 충실할 때 회사의 경영진과 안전·보건관계자가 매일 같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체크 하겠지만, 우리 몸에 대한 건강과 안전유지는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근무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를 들어서 하나를 알고 열을 들어서 열을 안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안전보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첫째도 실행, 둘째도 실행, 셋째도 실행이다.

무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거나 위험한 작업방법을 하여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를 당한 본인만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염려를 끼치게 된다.

안전한 작업이란 무리를 하지 않고 어떤 작은 것이라도 재해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은 전부 제거하고 안전하게 일한다는 각오를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한다.

금일 실시하는 신규채용 안전보건 교육은 안전의 첫 걸음이며 작업장에서 직접 취급하는 기계기구나 원재료들의 위험성 및 올바른 취급방법 또는 작업순서 등에 대한 세부 안전작업 교육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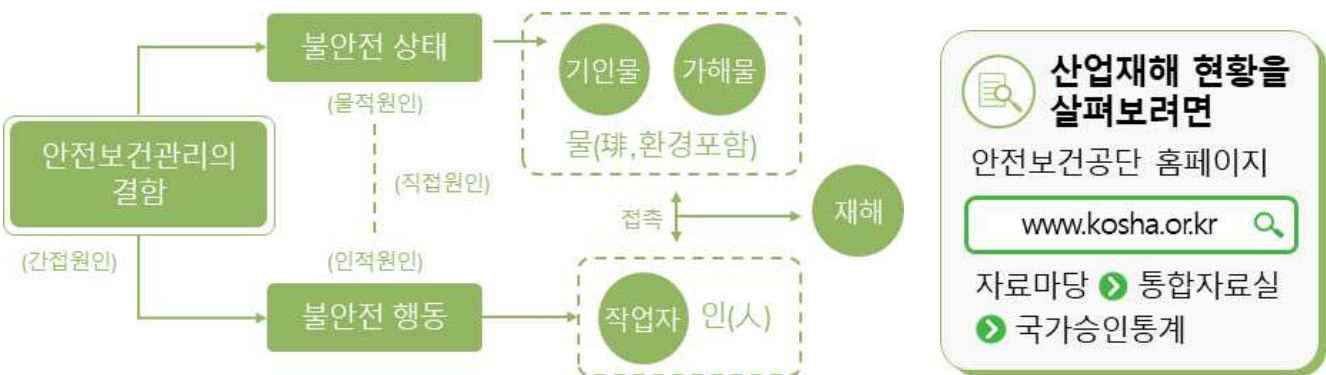
**안전TIP : 산업재해발생의 메카니즘**

초기의 안전보건관리의 결함을 계기로 직접원인으로 연계돼 최종적으로 재해를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하인리히(Heinrich)는 재해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 불안정한 행동(인적 원인), 불안정한 상태(물적 원인)를 지적하고 있다.

하인리히의 법칙(1:29:300)

●1 : 중상 또는 사망, ●29 : 경상, ●300 : 무상해사고

\* 330회의 사고 가운데 중상 또는 사망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의 비율로 사고 발생





## 제2편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1. 산업보건 이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와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이라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때 보다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와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을 유지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병예방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와 보건관리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산업보건은 사업장에서의 작업 및 작업환경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문제를 취급하는 산업위생분야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관리 뿐만 아니라 그 대책을 취급한다.

기업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유해방지를 위한 안전위생관리체제가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상응하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보건이란 이러한 노동위생문제의 개념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고 특히 근로자의 건강을 촉진시키고 재해를 예방한다거나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면에서의 제반서비스라고 한다.

#### 가. 근로자 건강증진 운동

건강은 신체에 이상이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고 있다.

건강증진운동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지도, 체력향상지도, 영양관리, 건강상담 등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증진 및 질병 예방을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 (1) 건강의 생리적 기능 정상치

혈압 범위	수축기 혈압	확장기 혈압	혈당 범위	정상	당뇨 전단계	당뇨관리 필요
정상혈압	120mmHg	80mmHg	공복	99mmHg 이하	100~125mmHg	126mmHg 이상
고혈압 전단계	120~139mmHg	80~89mmHg	식후 1시간	180mmHg 이하	200mmHg 이상	200mmHg 이상
고혈압 1단계	140~159mmHg	90~99mmHg	식후 2시간	140mmHg 이하	140~199mmHg	200mmHg 이상

#### (2) 실천요령

##### 가) 스트레스

##### ■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예방수칙

- 달리기, 수영, 등산, 빨리걷기 등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한다.
- 스트레칭, 요가, 단전호흡, 명상 등 긴장을 완화시킨다.
- 과다한 음주와 흡연은 피한다. -취미생활, 오락, 운동 등 건전한 생활 리듬을 유지한다.
-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휴일에는 꼭 쉬며, 긍정적 태도가 중요하다

##### 나) 금연

-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 증가 -비 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 20배
-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4배 증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암확률 3.1배 증가

**(다) 골고루 먹기**

■ 제때 골고루 먹기 중요한 이유

- 칼로리 섭취를 10%~30% 줄이면 면역력이 50%까지 높아진다.
- 서구 식단화, 회식, 야식 등으로 인한 칼로리 섭취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 염분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섭취기준 대비 3배에 달하는 나트륨을 과잉섭취)
- 근로자의 70%가 급하게 식사하고 이 중 46%가 속쓰림, 20%가 위식도역류질환을 호소한다.
- 아침을 결식하는 근로자의 22.8%가 혈당치 저하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를 경험한다.

**(라) 고지혈증 건강한 식습관 관리 운동으로 예방(보건복지부)**

- 식이 섬유가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곡물류, 야채와 과일, 콩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의 섭취량을 늘려주고. 완두콩, 땅콩, 표고 버섯, 고구마 등의 음식을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
- 술을 멀리하기(술은 간에서 지방합성을 촉진시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칼로리 안주 역시 중성지방을 높이는 원인)
- 금연하기(담배의 니코틴 등 유해성분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동맥경화 유발)
- 유산소 운동하기(규칙적인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혈압을 낮춰 고지혈증 예방에 좋으며. 가벼운 조깅, 속보, 수영, 자전거타기 등 유산소 운동으로 중성지방 수치감소. 일주일에 5일, 1회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약간 힘들다는 느낌으로 운동해야 효과)

**(마) 당뇨병 매일 생활습관 관리(대한당뇨병학회)**

- 꾸준한 약 복용으로 혈당을 관리한다
- 건강식단으로 하루 새끼 식사한다(고른 영양소 식단, 채소 많이 먹기, 권장량 우유, 과일)
-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늘린다(주 3~5회, 30~60분 이상, 유산소 및 근력운동)
- 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발 상태 관찰, 양말 꼭 신고 발톱은 일자로 넉넉히 자름)
-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금연, 음주자제, 숙면, 스트레스 관리)

**(바) 고혈압 예방수칙 6가지(대한고혈압학회)**

- 올바른 영양소 섭취(지방질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
- 음주 자제(술은 되도록 삼가)
- 담배 금지(금연)
- 꾸준한 운동(매일 30분 이상 운동)
- 정기적인 검진(정기적으로 혈압측정과 의사 진찰)
- 꾸준한 체중유지(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유지)



**(사) 뇌심혈관질환예방(보건복지부)**

- 흡연, 금주 또는 절주(하루 한두잔 이하)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 가능한 한 매일 30분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
-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한다
-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간다.



## 나. 산업위생과 간호

### (1) 개인위생 관리

#### (가) 작업장에서의 개인위생관리

작업장에는 각종 화학물질 및 분진, 세균 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작업자의 의복이나 피부에 묻게 되고, 이들 유해물질에 의한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자는 작업과정 또는 작업 전·후에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나) 유해물질에 폭로 후 씻기

- 작업시작 전에는 고무장갑 등을 끼고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 유해물질에 폭로된 후에는 노출된 피부를 비누 등으로 깨끗이 씻는다.

#### (다) 음식물 섭취 전 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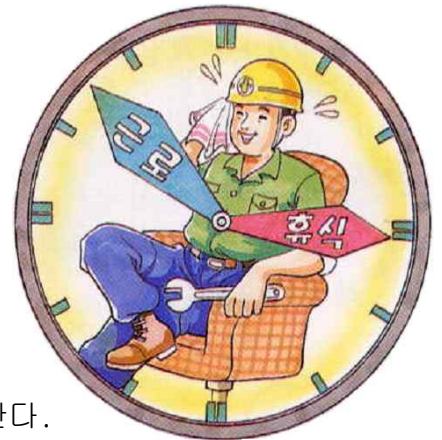
- 작업장이 지저분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하며 손을 깨끗이 씻고 난 후, 청결한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도록 한다.

#### (라) 작업복 세탁

- 작업시 유해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은 평상복과 구분하여 자주 세탁을 해야 하며 더러워진 작업복은 계속 입지 않아야 한다.

### (2) 건강수칙

- (가)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습관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
- (나) 과음, 과식은 건강의 적이므로 피해야 한다.
- (다) 몸이 불편한 때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 (라) 작업에 임할 때에는 사심을 버려야 한다.
- (마) 항상 유쾌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 (바) 응급조치와 비상시의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 (사)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아) 야간근무자는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한다.



## 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일반, 배치전, 특수)의 중요한 목적은 본인이 느끼지 못한 사이에 생긴 질병을 빨리 발견하여 빨리 치료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 여러분이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병을 앓고 있는 자를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여 전염을 방지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다.

전염성이 없는 질병이라도 질병은 작업과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어폰을 통해 스테레오 음악을 즐기는 사람의 난청이 눈에 띄게 되었으며 여기에 직장의 소음이 가중되면 점점 귀가들리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빈혈이나 심장병, 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유해물 등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질병이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 치료와 동시에 작업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 2. 작업환경 유해요인과 직업병 예방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환경을 작업환경이라고 한다. 작업환경 속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해로운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기위해 매우 중요하다.

### 가.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⑩

2023년도 13,010명(신체부담작업 7,596명·비 사고성요통 2,272명·사고성요통 2,932명·수근관증후군 210명)의 근골격계질환 재해가 발생하여 전체 업무상 질병자 22,127명의 57.8%를 차지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은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복적인 동작, 부자연스런 자세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기적인 충분한 휴식시간 갖기

이에 따라 공단은 작업과 관련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10대 수칙을 제시했다.

<p>①</p> <p>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기</p>	<p>②</p> <p>어깨 위 높이에는 되도록 물건을 두지 않기</p>	<p>③</p> <p>물건 운반 시 이동대차 사용하기</p>
<p>④</p> <p>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나 공구는 몸 가까이 두기</p>	<p>⑤</p> <p>작업높이는 팔꿈치 높이로 하기</p>	<p>⑥</p> <p>수공구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을 선택하기</p>
<p>⑦</p> <p>오래 서서 일할 때는 입좌식 의자나 발 받침대 사용하기</p>	<p>⑧</p> <p>작업장 정리정돈을 잘하고 바닥은 평편하게 하기</p>	<p>⑨</p> <p>스트레칭을 생활화하기</p>

## 나. 조명·채광

우리는 작업장에서나 집에서 조명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때때로 잊고 생활한다. 우리의 눈은 상당히 큰 폭의 빛의 밝기에 대해 적응할 수 있으나 부적절한 조명은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또한 부적절한 조명은 눈에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작업을 할 때에 재료와 생산품과 그 밖의 설비를 정확히 보아야 하며 잘 볼 수가 없으면 곧 피로해지고 지나친 작업부담과 두통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작업장의 조명은 자연광선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그러기 위해 물건을 쌓아놓아 일광을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광은 계절 및 날씨에 따라 변하므로 필요한 조명의 양은 일광과 무관하게 인공조명으로 결정해야 한다.

창문의 유리는 양면 모두 반드시 깨끗이 하고 창문과 마주하고 있는 벽은 일광을 반사시켜 작업장을 더욱 밝게 하기 위해 하얀색으로 칠하는 것이 좋다.

조명은 작업하는 사람이나 기계 때문에 작업면이 그늘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전구와 갓에 묻은 먼지는 빛의 밝기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

## 다. 전체 환기

가정에서 난방을 가동시킨 경우에는 실내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시키고, 화장실에는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풍기를 달아 환기를 시킨다.

직장에서도 가정의 경우와 같으며 특히 너무 덥고 습기가 많은 작업장이나 분진, 가스, 연기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운 오염된 공기를 일정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전체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의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에 전체환기장치나 국소배기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치들이 유효적절하게 가동되기 위해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여과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라. 국소배기장치

작업장의 공기오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유해공정을 밀폐하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염된 공기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분진이나 가스, 유기용제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그 유해물이 작업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오염공기를 빨아들이는 입구인 후드의 형식이 적절한지, 크기는 적당한지, 후드는 오염물이 발산하는 발산원마다 있는지, 후드 부분에 장애물이 없고 또한 방해기류는 없는지 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 마. 분진

어떤 딱딱한 물체를 부수거나 갈아내면 아주 작은 입자가 날게 되는데 이를 분진이라고 한다. 이중 우리의 폐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먼지를 호흡성분진이라고 하며 이런 호흡성분진이 사람의 몸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진폐증질환이 생기게 된다.

일단 진폐증에 걸리게 되면 영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환이므로 여러분들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일할 때는 적절한 방진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해야 한다.



## 바. 산과 알칼리

산과 알칼리는 부식성 물질로서 접촉하면 피부나 눈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것은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은 강산들이다. 이러한 강산들이 피부에 접촉되면 화상을 입게 된다. 이외에 알칼리성 물질은 가성소다와 암모니아수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물질과 접촉되거나 마시게 되면 기도와 점막에 자극을 주어 궤양이 생기고 재채기,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 산과 알칼리물질이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심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다량의 흐르는 물로 씻어 주어야만 한다.



## 사. 소음

듣고 싶지 않은 음을 소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주파수가 불규칙한 음을 소음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소음이 더 많아졌다. 왜냐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인 기계장치들은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음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소음수준이 높은 경우 심하면 혈압이 상승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여러분은 가끔 총소리 같이 강렬한 소음을 듣고 나면 한동안 귀가 멍멍하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을 하고 나면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기계 소리만이 귀에서 나다가 얼마간 휴식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현상을 '일시적 난청'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시신경에 손상이 오고 '영구적 난청'이 되기도 하며 직업성난청이 되면 다시는 귀를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작업 중간 중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러분들은 소음의 강도가 높은 곳에서 일을 할 때에 귀마개나 귀뿔개와 같은 청력보호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혈렁한 귀마개나 뿔아빠진 귀뿔개는 청력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검사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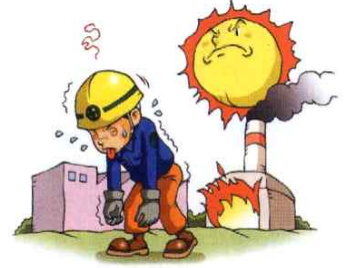


## 아. 고열

무더운 계절에 우리는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작업능률은 떨어지게 된다. 요즘은 에어컨등을 이용하여 때때로 생활공간이나 작업장내의 기온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나 견디기 어려운 고열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몸에는 고온환경에 살거나 작업할 때 환경에 순응 하려는 능력이 있으나 신체가 적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열에 의한 신체적 부담이 커지면 현기증이 나며, 어지러워지는 열피로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서늘한 장소에 누워 쉬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발한작용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피부가 매우 뜨겁고 건조한 상태가 되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계속 급상승하는 열사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즉시 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몸을 물을 적셔 체온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 자. 유기용제

유기용제는 상온, 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써 기름과 같은 유기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유기용제의 종류는 약 400만 종류나 되고 우리 생활중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세척, 탈지, 인쇄, 도료제조 등에 쓰이고 있다.

많은 종류의 유기용제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피부를 통해 들어오기도 하며 이때 각 종류의 유기용제에 따라 작용하는 기관이 다르게 된다. 예를 들면 벤젠은 피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메칠알콜은 눈을 멀게 하기도 한다.

대체로 유기용제가 우리 몸에 흡수되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마취작용, 현기증, 두통, 피로, 이해력감퇴, 반응시간 지연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장기간 반복해서 유기용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유기용제 중독을 일으키게 되므로 유기용제를 사용할 때는 그것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성분 및 함유량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유해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또한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필요하고 화기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 여러분은 정해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 차. 금속 및 그 밖의 화학물질

수많은 금속 및 금속합금들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납, 카드뮴, 수은도 신경계통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들은 이신체에 암을 일으킨다고 한다. 대부분의 금속들은 체내에 들어가면 혈액속에 녹아들어 다른 장기로 이동하여 특별히 그 기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또한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신발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카. 산소결핍

공기중에는 대략 21%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산소가 18%이하로 되면 위험 신호이다. 그래서 공기중에 산소가 18%미만의 상태를 산소결핍이라고 한다.

산소결핍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며 금속의 녹이나 세균류, 식물 등이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유해가스 등이 유입되어 산소결핍현상이 발생하므로 굴 이나 탱크, 지하작업 등의 경우에는 산소결핍을 의심해야 한다.

산소결핍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정상적인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작업장 내부를 완전히 환기시키고 산소농도를 체크한 후에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호스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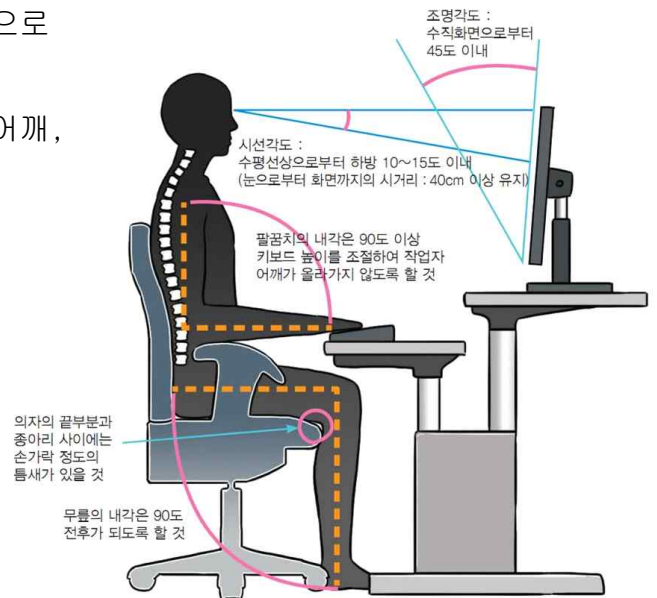


### 타. VDT작업

VDT(Visual Display Terminal)란 컴퓨터단말기 또는 영상표시단말기를 말하며 요즘에 컴퓨터가 급격히 보급됨에 따라 컴퓨터단말기 조작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흔히 나타나는 건강장해로는 눈의 피로와 목, 어깨, 팔, 배, 허리, 손가락, 손목 근육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또한 단순반복작업 및 타율적 작업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초조, 좌절감, 근심, 긴장, 무기력 증상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연속적인 VDT작업시간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올바른 VDT작업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 ■ VDT 증후군 예방 5대 수칙

1. 허리는 의자 등받이에 지지되도록 하며 곧게 펴고 바르게 앉는다.
2. 모니터는 화면 상단과 눈높이가 일치 하도록 맞춘다.
3. 키보드와 작업대 높이는 팔꿈치 높이 정도로 조절한다.
4. 키보드와 마우스는 손목이 꺾이지 않고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 시킨다.
5. 1시간 일할 경우 10분간 휴식을 꼭 취한다.



## 제3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1. 위험성평가 개요

가.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나.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 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시기

가. 실시 대상: 모든 사업장

- 나. 실시 시기: -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 정기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 수시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 다음의 계획이 있는 경우, 실행 착수 전에 실시

-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⑤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등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에 실시

### 3. 위험성평가 역할과 책임

조직	역할과 책임 (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b>&lt;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li> <li>-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li> <li>-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li> <li>-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li> </ul> </li> <li>· 위험요인 발굴지원</li> <li>·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li> <li>·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li> <li>·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독력</li> </ul>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b>&lt;위험성평가 실시&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li> <li>·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li> <li>·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li> <li>·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li> </ul>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b>&lt;위험성평가 참여&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li> <li>·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 대책 확인</li> <li>·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li> <li>·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li> <li>· 아차사고 사례의 적극적 제보</li> </ul>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b>&lt;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li> <li>·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li> <li>·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li> <li>·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li> <li>· 위험성 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li> </ul>

## 4. 위험성평가 용어 정의

- ▶ “위험성평가”의 개념, 각 단계별 수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여 고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가. 유해·위험요인이란?

-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을 의미함. 이 가능성은 기계·장비, 물질, 운송과정, 작업 부산물, 작업방식, 관행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내재되어 있음

나. 위험성이란?

- ▶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 "가능성"은 작업자의 부상·질병 발생의 확률을 의미하며, 유해·위험한 사건에의 노출, 유해·위험한 사건의 발생,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중대성"은 부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강도 또는 심각성)를 의미하며,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치료기간, 사망 후유 장애 유무, 피해의 범위(한 사람, 여러 사람)를 고려함
  - 다르게 표현하면, 위험성은 누군가가 유해 위험요인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높음 또는 낮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위험성평가란?

-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5. 위험성평가의 절차

### 가.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①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②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③ 평가시기 및 절차
- ④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 ⑤ 결과의 기록·보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정

- 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 ②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함)

다음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

- ①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②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③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④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⑤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⑥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 ⑦ 공단 제공 위험성평가 자료
- ⑧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나.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 유해위험요인이 된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방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 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주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그리고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여 기계·기구, 설비와 작업방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②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유해·위험한 상황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이메일, 제안함, 포스트잇, 앱 등)
- ③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가급적 임시·수시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
  - 작업과정과 방식에 대해 잘 알고,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해 알고 있는 현장책임자 등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여 유해·위험요인 조사
-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사고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뻔 했던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던 작업의 작업절차서, 공정 흐름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활용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수준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거나,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가 발생한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개선 권고사항 검토
- 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목록화하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정하여 단계별로 검토
- ⑥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다.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때의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



1) 사전준비 시에 마련해놓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을 경우 위험성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위험성평가 방법 활용

① 체크리스트법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재 적정한지 아닌지 ○ 또는 X 로 표시하는 방법

②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③ 핵심요인 기술법

- 단계적으로 핵심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단순하고 가짓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에서 시행하기 좋은 방법

④ 빈도·강도법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

2) 사업주는 위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험성의 상·중·하 여부 판단 시 사전준비 단계에서 이미 마련해 둔 기준\*을 활용함

\*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예시)]

상: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

중: 근로자가 연속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 하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

하: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

② 사전준비 단계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하’ 로 설정하였으면, ‘상’ , ‘중’ 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하’ 까지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필요

③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가 드물게 일어나는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할 수 있음

- 다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에서 실제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라.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및 다음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에 고려하여야 할 순서

①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

②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③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 검토

- ④ 작업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적 방법 검토
- ⑤ 개인보호구 사용 검토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마. 위험성평가의 공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①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 ②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③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④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업별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알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유의 방법으로 게시판 교육 TBM, 앱(APP),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기록·보존할 사항

- 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②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③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④ 위험성 결정의 내용
- ⑤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⑥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재검토를 위해서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 :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

#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 누가 하나요?

**주도**



**사업주**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

**참여**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 언제 하나요?

**1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2 정기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3 수시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새로운 평가 방식**  
②+③을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

**2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월(月)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전제도 실시 → <b>평가</b>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 <b>이행확인 및 점검</b>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b>공유</b>

## 어떻게 하나요?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 담당자·참여자 선정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제안전제도 실시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기록**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 제4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

#### 가. 법 제·개정 배경과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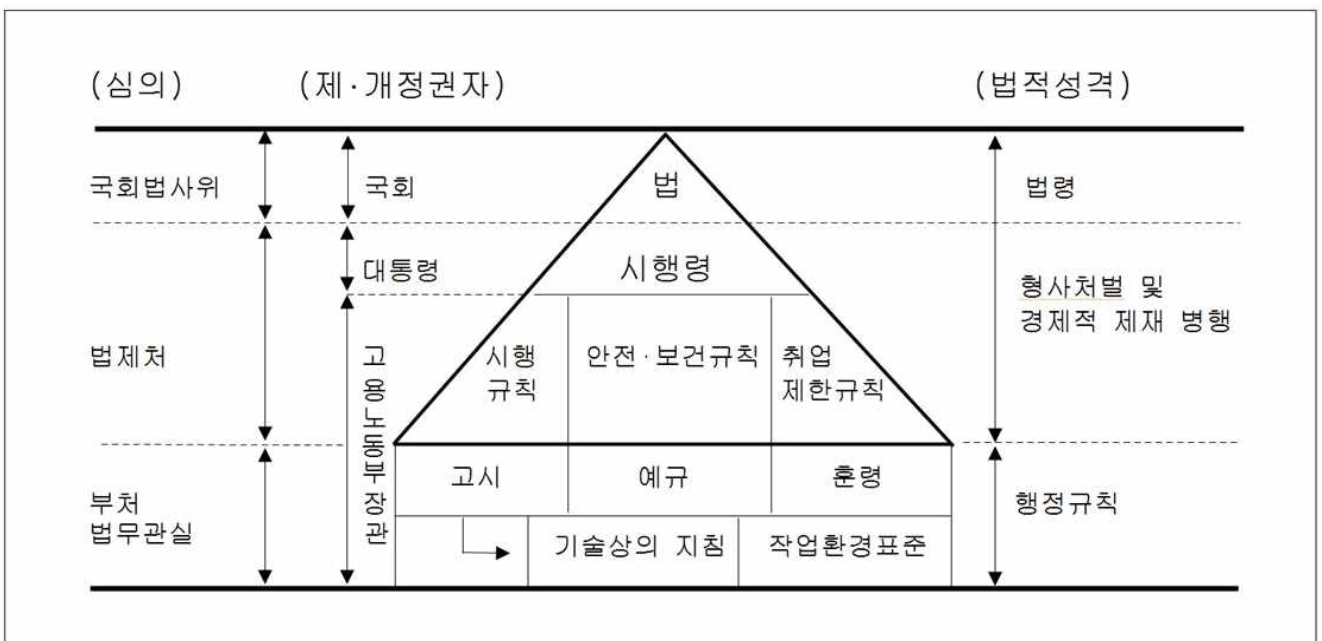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은 근로기준법으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의 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6장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10개 조항을 규정하고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업주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업장에 있어서의 기계설비의 대형화, 고속화 및 건설공사의 대규모화 등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등으로 새로운 직업성 질병이 증가하는 등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독립법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법률 제19591호(시행 2024년 5월 17일) 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 나. 법령의 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1개의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1개의 대통령령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는 4개의 부령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 관한규칙,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고시·예규·훈령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효력 순위는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순서로 되어있다.



## 다. 주요 산업안전·보건 법령

###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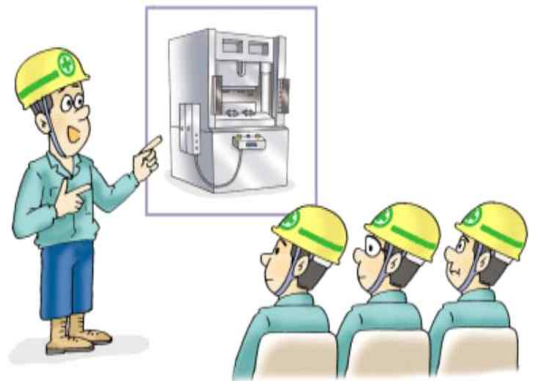
-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1) 안전·보건수칙을 준수
- (2) 표준작업방법의 준수와 주변 정리정돈 실시
- (3) 유해·위험장소의 출입금지
-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
- (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시에 의견 제시
- (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의 경우 의견제시, 안전·보건관계자의 지도조언에 따름
- (7) 안전·보건교육에 참석, 보호구 착용철저(안전화, 안전모, 귀마개 등)
- (8) 방호조치의 임의 해체금지 및 작업 신호 준수,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 조치를 준수
- (9)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의 실시, 유해물질 취급 시 사용·조치요령 준수
- (10) 사업주가 행한 보건상의 조치를 준수, 작업환경측정 시 입회 가능 및 개인위생 청결유지



### 법 제37조 【안전표지의 부착·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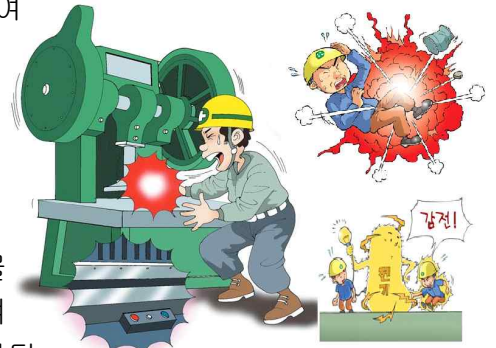
☞ 과태료(1개소 당): 1차1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법 제38조 【안전 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9조 【보건 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 제40조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 과태료: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정기교육: 판매 업무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사무직 또는 판매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 ☞ 과태료(1명당): 1차10만원 2차20만 3차50만
- (2)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과태료(1명당): 1차50만원, 2차250만, 3차500만
- (3) 채용시 의 교육: 8시간 이상(일용직 1시간) ☞ 과태료(1명당): 1차10만원, 2차20만, 3차50만
  - ▶ 동종업종 6개월 이상 경력자를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할 경우 4시간(제33조의2 제4항)
- (4) 유해·위험작업종사자 특별안전교육: 16시간 이상 ☞ 과태료(1명당): 1차50만원 2차100만 3차150만

**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법 제93조 【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대당 1차200만원, 2차600만원, 3차1000만원
- ☞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대당 1차50만원, 2차250만원, 3차500만원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1차300만원, 2차600만원, 3차1000만

**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29조 【건강진단】**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 실시 1명당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법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3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 안전보건표지판 부착·표시

우리 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여러가지 위험한 상태나 하여서는 안될 것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 안전보건표지이다.

여러분은 안전보건표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 하여야 한다.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시행규칙 제38조 1항 관련) <개정 2019.12.26>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개정 2010. 5. 20., 2021. 1. 26>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9. 1. 15>

###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같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0. 5. 20>

## 제5편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 1. 직무스트레스 정의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OECD 국가의 직장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스트레스란 직무 즉 업무로 인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3~4살 아동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현대인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

스트레스 학설을 제창한 한스 셀리에(Hans selye) 라는 학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라 말할 정도로 인간은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직무스트레스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GUIDE H-67-2012)에서는 직무스트레스요인(Job stressor)이라 함은 작업과 관련하여 생체에 가해지는 정신적·육체적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심리적·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이라 정의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1999)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정서적 반응이라 정의하였다.

### 2. 스트레스 구분

#### 가. 부정적인 스트레스(Distress)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해로움을 주는 스트레스로 어떤 사건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경우로 디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물리적 기능을 방해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질병이나 무력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 나. 긍정적인 스트레스(Eustress)

도움이나 행복감을 주는 바람직한 또는 원하는 스트레스로 사전에 이미 계획된 것 또는 한 개인의 생활에 잘 적응된 변화로 삶에 의미를 더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게 하여 질병 등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모두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목표를 성취하도록 힘을 주며, 동기를 유발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기도 한다.

사람들은 똑 같은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인식의 문제인 것이다.

스트레스는 삶에 있어서 성장하는 하나의 길이며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바로 이러한 기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 3.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 가. 직무스트레스의 관리 이유와 흐름

- 1) 회사내에서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
  - 미국 통계에 의하면 연간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결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연간 3,000억불 노동자 개인당 7,500불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음



-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
- 2)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의 흐름
  -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향, 개인의 대응 전략에 초점을 두는 방향, 개인적·조직적 접근

## 나. 직무스트레스 관리의 개인적 접근

### 1) 약물 치료

- 스트레스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우울증, 불안증, 신체장애의 상당수는 약물치료가 필요함
- 우울증의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기간을 현격히 단축할 수 있으며 자살이나 사고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2) 자기 관찰(self-observation)

- 평소에 모르던 행동 습관을 인식
- 자신의 인지 행동적 반응이 상황적 선행인자 및 결과와 연관되는지 알수 있음
- 자신의 행동양상을 바꿔서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 3) 인지행동치료 접근

- 불안과 정신신체장애 등 스트레스성 질환의 치료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방법
-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인지적평가 및 이와 관련된 대처 노력이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

### 4) 인지모델의 기본 원리

- 우리의 감정은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이러한 해석은 많은 경우 너무 바르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신도 잘 의식하지 못하며 불안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것이 중요

### 5) 자기 주장 훈련(assertiveness training)

- 주장 훈련이란 다른 사람을 비난 하거나 지시하여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분명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등을 나타내는 것
- 이를 훈련하면 정서적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을 억제하고 억제된 감정을 해소하여 부정적 사고와 자기 비하적 사고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결국 갈등을 능숙하게 다뤄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임

### 6) 분노조절 훈련

- 심호흡,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분노를 경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적절히 표현하면 그 부정적인 효과는 상쇄되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됨
- 하지만 분노를 안으로 쌓아 놓거나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면 분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겨으며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심호흡,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비현실적 신념 깨달기, 용서를 통한 해소 등 감정을 스스로 조절해야 함

## 제6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 관련 법규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 2. 직장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3. 직장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

#### 가. 행위자

①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자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자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종인 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 사업주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음

②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① 사용자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당해 사업장(사용자)소속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행위자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접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② 사용 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간에 발생한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의무 등을 부담

-사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안인 만큼 사용사업장의 예방·대응체계에 따라 처리

③ 괴롭힘 행위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 징계 등의 인사권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④ 원-하청 근로자간에 발생한 경우

-원청 소속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청 소속근로자를 직장내 괴롭힘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but, 원청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규정할 때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나. 행위 요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

-지위의 우위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

-관계의 우위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됨

-우위성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 이어야함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 이라면 업무 관련성 인정 가능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 예시(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폭행 및 협박 행위

·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직·간접의 물리적힘을 행사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인정 가능

-폭언, 욕설, 헐담 등 언어적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가능

· 지속·반복적 폭언·욕설은 인격권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정 가능

-사적 용무 지시

·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인정 가능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가능

-과도한 업무부여

·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가능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인트라넷접속 차단 등 원활한 업무수행 방해 시 인정 가능

☞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제공을 못할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 경영악화 등으로 발생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려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화장실 앞 근무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어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경우

다. 행위 장소(괴롭힘 행위 발생 장소로 인정될 수 있는 곳)

- ①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 ② 회식이나 기업행사 현장 등
- ③ 사적 공간
- ④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 4.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 가. 당사간의 관계
  - 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 다. 행위 내용 및 정도
  - 라. 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
- ☞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5.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 가.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나.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함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 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 전화 등)미제공, 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 차단
- ☞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 ☞ 징계 등으로 규제할 행위, 규제대상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결정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언론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 상담사례 등 실제 발생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예시]

[해당 행위발생 시 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 행위 내용,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

### 1.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헐담

- 대표가 다른 직원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며 5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생산직 발령 및 급여 강등, 6개월 감봉 중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적어 내라고 함
- 그 결과를 직원들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려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당 직원들을 모욕하고, “내가 죽게 되면 너희를 먼저 죽이고 죽겠다” 는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함
- 전자부품 회사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본사영업부로 발탁될 만큼 인정받았으나 시장 내 점유율이 떨어지자 회복시키라는 압박을 받던 중에 출장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보고서를 찢고 집기를 던지는 등 상사의 실적 추궁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을 동반함
-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겹옷을 입거나 마스크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
- 가전 배송업무를 하는 부 기사의 사수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수시로 욕하고, 피우던 담배나 라이터를 얼굴에 던지거나 손찌검까지 함
- 배송하러 갔을 때 고객이 음료수를 쥐도 혼자 다 마시고 피해자는 마시지도 못하게 하여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마신 적도 있음
- 차장이 사적인 일로 기분 나쁘면 아무나 걸리라 하고 트집 잡아 서류를 던지는 등 괴롭힘
- “주둥이가 그게 뭐냐, 쥐 잡아먹었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오빠 같아 그러는데 남친 만나면 꼭 콘돔 써라” 등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반복하고 상부에 괴롭힘 사실을 보고 해도 다시 보복성 공격을 퍼붓곤 함
-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술기구를 던짐
- 간호사들이 그 의사 때문에 퇴직을 하다 보니 남은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됨. 병원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의사 편만 들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음
- 신규간호사에게 입사 3일째부터 업무를 가르쳐주는 프리셉터(일종의 멘토)의 태움이 시작됨
-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둬라.”, “이게 눈에 안보이냐? 눈깔을 빼서 씻어줄까?” 등 폭언을 하고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후 못할 경우 욕하기도 함

### 2.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 회사에서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며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함
- 복면가왕 같은 장기자랑을 요구하면서 가면이나 복장은 사비로 마련하게 하고 장기자랑을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하도록 강요함
- 회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사장이 전 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해서 마시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한 남자직원이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받은 술을 몰래 뱉자 사장은 왜뺄냐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켜 마시게 함

### 3.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배제

- 기업 차원에서 ‘복직자 관리 방안’ 을 만들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함
- 다른 근로자들보다 집중적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고강도 업무지시 계획을 세워 실제로 해당 방안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 비밀번호와 피해자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꿔 접근을 막음
- 업무용 메신저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따돌림
- 거래처 사장에게 소개팅 받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거래처 사장과 놀아난 여직원” 이라고함
- “거래처에 기밀노출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널 데리고 있을 수 없다.” 라며 애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고, 없는 얘기를 퍼뜨려 따돌림 당하게 함
- 인사, 구매 등 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계기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됨
-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켰으며 노조로부터 해고 협박을 받기도함
-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면전에서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폭력을 가함
- 겨울,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만 사용함 (인권위진정사건: 16진정0186100)

#### 4. 사적 용무 지시

- 상사가 직원에게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하고, 개인적인 강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작성,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를 시킴
- 이로 인해 직원은 근무시간도 부족하여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새로 부임한 상사가 직원들 몇 명을 뽑아 회사 내 체력단련장에서 개인운동 트레이너 역할을 시키고, 운동 중간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자신의 몸을 마사지하도록 지시함

#### 5. sns,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 팀 모바일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 하는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하며 팀원들을 괴롭힘
- 상사 본인의 지대로 안되면 소리를 지르고 욕박지르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
- 상사가 아침 일찍 모바일 채팅으로 갑자기 조기 출근을 지시하여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 중이었으나,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며 다시 정시 출근하라고 함
- 밤낮 없이 단체 채팅을 시도했으나 감정 상한 일을 따지는 말이 대부분이었으며 응답 하지않는 직원에게는 단체채팅 등을 통해 화풀이를 함

#### 6. 감시

- 회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모니터가 중간관리자의 자리에 설치돼 있음
- CCTV로 직원들을 실시간 관찰하며 간식을 먹은 직원들에게 “간식은 맛있었냐” 는 등 경고 메일,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감시 사실을 주지시킴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

##### 1. 최고 경영자의 정책 선언

예방의 첫걸음은 사업주 등 최고경영자가 정책선언문, 윤리강령선포를 통해 근절의지를 전함

##### 2.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점검

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조직문화,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나. 노조,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측 참여 기구를 통해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협의하면 효과 증대

다.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 3. 예방교육 및 대응 업무 수행 지원

#### 가. 예방교육

-제도의 이해 및 예방측면에서 교육실시가 효과적이며 연1회 등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하여 실시

-교육방식과 내용은 기업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 기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인권교육에 콘텐츠와 시간 등을 확대·보완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

#### 나. 예방·대응조직(담당자)의 운영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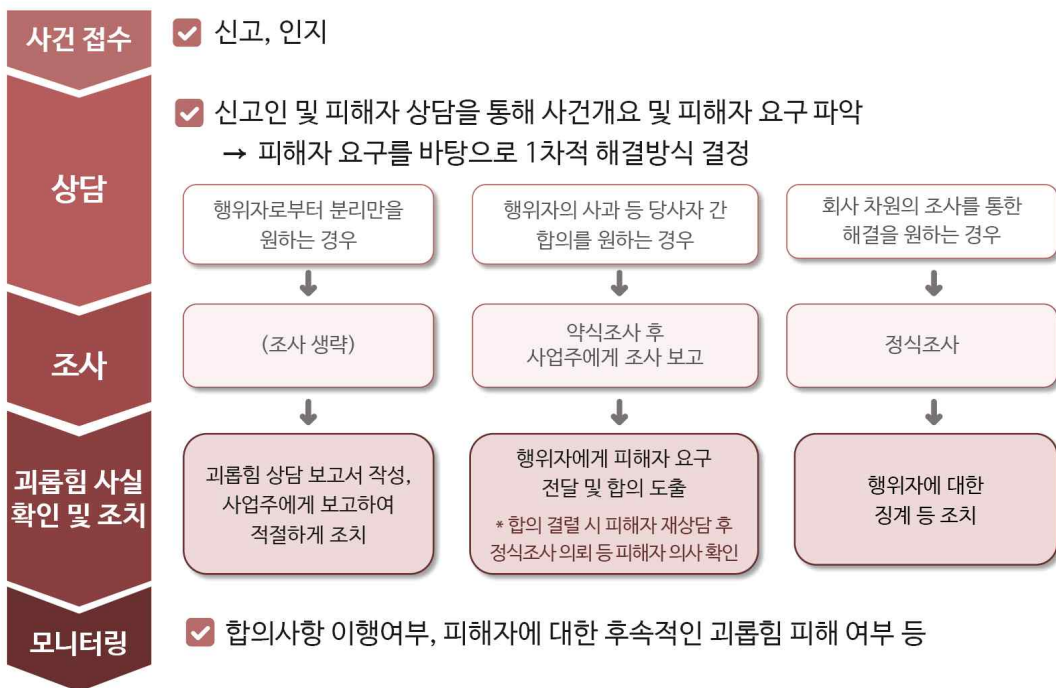
-직장 내 성희롱예방·고충상담 업무 담당자가 괴롭힘예방·대응업무도 수행 가능하나, 성희롱과 괴롭힘은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

#### 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

-리플릿 배포, 포스터 게시, 급여명세서에 문구삽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홍보

-근로자들이 신고 및 구제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 주지시키고 캠페인 기간을 정해 집중 홍보

### 4. 사건 처리 절차





# 우리 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건강보호에 대해 관심 갖기 ①

- 감정노동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건강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 고객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리 회사의 감정노동 현황 파악하기 ②

- 감정노동 업무의 종류, 감정노동 업무량, 고객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당한 요구는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기 ③

- 정상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무리한 행위를 하는 고객의 요구를 통제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폭력, 폭언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④

- 고객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면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할 경우 담당자의 태도 지적 등 본질을 벗어난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자에게 업무 처리 재량권 부여하기 ⑤

- 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감정노동 관리 10대 수칙



내 가족 감정노동자

##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하기 ⑥

-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를 회사에 알렸음에도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지시를 듣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를 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휴게시설 설치하기 ⑦

- 근로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했거나 고객과 심한 다툼이 있었을 때 잠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만들기 ⑧

- 직장 내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객 응대 매뉴얼은 문제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고객 대응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감정노동 관리 방법에 대해 근로자 교육하기 ⑨

- 고객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친절 위주의 서비스 교육을 지양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 또는 고객 응대 기술 등 직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내 고충처리를 위한 건의제도 만들기 ⑩

- 고객응대업무 종사자를 존중하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합니다.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힐링센터 운영, 고객응대 업무 홍보 포스터 게시, 경찰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 관련  
사업주 의무사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할 것',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할 등의 조치를 할 것', '고객응대근로자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 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2018년 4월 17일 공포되어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반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감정노동 예방은 이렇게 합시다!



## → 악성고객 대응요령

### 대면업무

성희롱, 폭력, 기물파손

즉시경고, 녹화, 신속제지

폭언, 난동  
<경청>

자제요청

녹화 고지

법적조치  
구두경고

상담 종료,  
경찰 등 신고

“폭언을 계속하시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습니다.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녹화(녹음) 하겠습니다.”

“모욕죄 등으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상담이 어려우므로 종료(신고)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검토

### 비대면업무

폭언  
<경청>

자제요청

녹음 고지

법적조치  
구두경고

상담 종료

성희롱

즉시경고, 녹음

## → 감정의 자기조절법

방법	내용
스트레스 자각하기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왜 일어나는지 자신의 마음을 인지하는 것
노여움 발산하기	화가 났을 때 산책하거나, 베개를 발로 차거나, 글을 쓰거나 낙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상대방 말을 듣기	화가 나는 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당한 분노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는 것
긍정적 태도 갖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 일을 즐겁게 하도록 긍정적인 태도 갖기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동료와의 허심탄회한 관계,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스트레스 낮추기
창조적 에너지 쓰기	창조성이 요구되는 작업(노래, 춤, 요리 등)을 골라 꾸준히 하기
주변환경 변화	주변환경(가구배치, 주방장리 등)을 바꿔 기분전환하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기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
여유있게 스케줄 짜기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신의 능력이나 우선순위에 맞게 차근차근 해나가기
거절할 줄 알기	자신이 하기 힘든 것들을 미리 안된다고 거절하여 과다한 부담에 시달리지 않기
체념할 줄 알기	바꾸기 힘든 어려운 환경은 빨리 체념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자신이 바라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좌절감에 휩싸여 있지 말고 다른 목표를 세우기
겸허히 받아들이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서슴없이 적절한 상대방에게 그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 청하기

안전보건공단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북정동) / 고객만족센터 T. 052-7030-500, 1644-4544

자료다운로드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



## 제7편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1. 기계·기구의 위험성

기계들은 각각 기능과 용도가 다르며 모양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계설비는 원동기, 동력전달 장치, 작업점 및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몇가지 기본운동 및 동작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소정의 작업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기계설비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안전 공학적 견지에서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 위험성 분류

##### (1) 회전동작(Rotating motion)

플라이휠, 팬, 폴리, 축 등과 같이 회전운동을 하는 부위는 (가)접촉 및 말림 (나)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의 끼임, 협착, 트랩 형성 (다)회전체 자체 위험성이 상존함

##### (2) 횡측동작(Rectilinear motion)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위험이 형성되며 작업점과 기계적 결합부분에 위험성이 상존함

##### (3) 왕복동작(Reciprocating motion)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위험성이 형성되며 운동부 전후·좌우 등에 안전조치가 필요함

##### (4) 기타

(가) 진동 : 가공품이나 기계부품의 진동에 의한 위험

(나) 가공중인 소재 : 특히 회전소재 가공 접촉 위험

(다) 부착공구, 지그 등의 이탈 : 작동중인 기계에서 부착공구, 지그 등의 이탈에 의한 위험

(라) 가공결함 : 열처리, 용접불량, 가공불량 등에 의한 기계파손 위험

(마) 비기계적 위험 : X선 등의 방사선, 자외선, 압력, 고온, 소음 등에 의한 위험

#### 나. 사고체인(Accident chain)의 5요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계의 위험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중 기계의 위험점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기계요소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상해를 입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일 것이며 이에 의해 위험요소를 분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1요소(함정 Trap) : 기계의 운동에 의해서 트랩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나) 2요소(충격 Impact) : 운동하는 어떤 기계요소들과 사람이 부딪쳐 그 요소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가?

(다) 3요소(접촉 Contact) : 날카롭거나, 뜨겁거나 또는 전류가 흐름으로서 접촉 시 상해가 일어날 요소들이 있는가?

(라) 4요소(얽힘, 말림 Entanglement) : 작업자가 기계설비에 말려들어갈 염려는 없는가?

(마) 5요소(튀어나옴 Ejection) : 기계요소나 피가공재가 기계로부터 튀어나올 염려가 없는가?

따라서, 사고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 중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점에 또한 유의해야 한다.

## 다. 기계·기구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종류별 주요 예시

<p><b>협착점(Squeeze-Point)</b>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p>	
<p><b>끼임점(Shear-Point)</b> 고정부와 회전하는 동작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p>	
<p><b>절단점(Cutting-Point)</b> 회전하는 운동부거나 운동하는 기계부분 위험점</p>	
<p><b>물림점(Nip-Point)</b>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p>	
<p><b>접선 물림점 (Tangential Nip-Point)</b>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 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p>	
<p><b>회전 말림점 (Trapping-Point)</b>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p>	

## 2. 기계·기구의 방호

방호(Safeguard)란 인간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된 가드 또는 장치로써 일반적으로 방호(Safeguard)는 가드(Guard) 및 방호장치(Safety device)를 말하는 것이고 생산 기계의 방호로서는 가드와 방호장치가 각각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양쪽을 조합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 가.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를 방호장치라 한다. 방호장치는 제거, 설치, 조정 및 정비가 가능해야 하고 그 성능이 정확해야 하며 방호조치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재료, 공구 등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2) 위험부위에 인체의 접촉 또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것
- (3) 방음, 집진 등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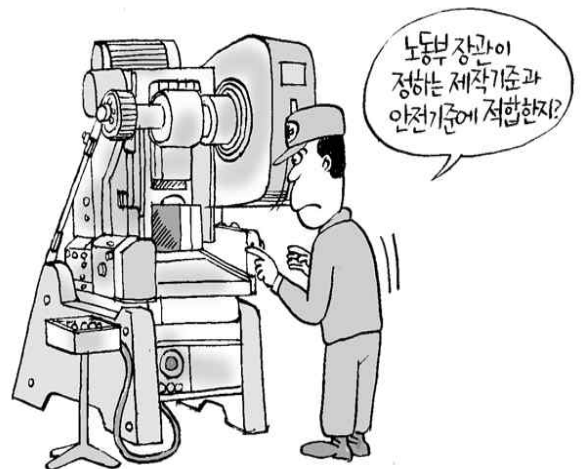
### 나. 방호장치 일반원칙

방호장치는 어디까지나 작업자를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작업자의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방호장치가 구비해야 할 일반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작업방해의 제거 : 방호장치로 인하여 작업방해가 된다는 것은 작업에 불안전 행동의 원인을 주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2) 작업점의 방호 : 방호장치는 작업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험한 작업 부분은 완전히 정확하게 방호되어야 하며 일부분이라도 노출되거나 틈을 주어서는 안된다.
- (3) 외관상 안전화 : 외관상으로 불완전한 설치나 불안정한 모습은 작업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므로써 불안전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4) 기계특성에의 적합성 : 방호장치는 당해 기계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 성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 다. 방호장치 선정시 주의사항

- (1) 방호의 정도 : 위험을 예지하는 것인가, 방지하는 것인가를 고려할 것
- (2) 적용의 범위 : 기계 성능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정할 것
- (3) 보수, 정비의 난이 : 점검, 분해, 조립하기 쉬운 구조일 것
- (4) 신뢰성 : 가능한 구조가 간단하며 방호능력의 신뢰도가 높을 것
- (5) 작업성 : 작업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 라. 작업점 방호방법

작업점을 가지고 있는 기계에 있어서는 작업점에서 가공 도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방호 대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1) 작업부분에의 작업자의 신체접촉 방지(예: 덮개)
- (2) 안전거리에서의 기계조작(예: 광전자식 방호장치)
- (3) 조작 시 위험부분에 접근금지 조치(예: 양수조작식방호장치, 원격조작)
- (4) 작업점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게 하는 방법(예: 보조공구사용, 자동공급배출장치)

## 3. 기계·설비 및 기타 일반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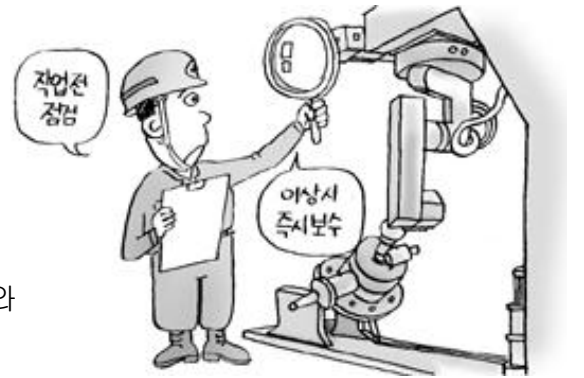
### 가. 기계의 정지 및 운전 시 점검사항

#### (1) 정지 상태시의 점검사항

급유상태, 전동기개폐기의 이상유무, 방호장치, 동력전달장치의 점검, 슬라이드 부분상태 힘이걸린 부분의 흠집, 손상의 이상 유무, 볼트 너트의 헐거움이나 풀림상태 확인, 스위치 구조와 구조상태, 어스접지 상태 점검

#### (2) 운전 상태시의 점검사항

클러치, 기어의 맞물림 상태, 베어링 온도상승 유무, 슬라이드면의 온도상승 여부, 진동 상태, 이상음, 시동 정지 상태



### 나. 기계 운전시 기본 안전수칙

- (1) 방호장치는 유효 적절히 사용하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떼어 놓지 않는다.
- (2) 작업 범위 이외의 기계는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공동작업을 할 경우 에는 타 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스위치를 넣는다.
- (3) 기계설비 운전중에는 기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 (4) 기계설비 운전중에 기계에서 이상음, 진동, 냄새 등이 날 때는 즉시 전원을 차단한다.
- (5) 기계설비를 청소한 기름걸레는 불연재 용기속에 넣고 자연발화 등의 위험을 예방한다.
- (6) 기계설비가 고장 났을 때에는 정지, 고장표시를 반드시 기계설비에 부착한다.
- (7) 작업이 끝나면 기계의 각 부위를 정지 위치에 놓는다.

### 다. 작업장내 정리 정돈

- (1) 공구는 항상 정해진 위치에 나열하여 놓는다.
- (2) 작업장 바닥면에 미끄럼 등의 위험성이 없도록 항상 안전 상태를 유지할 것
- (3) 자재와 장비 그리고 잔재를 버리는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
- (4) 소화기구나 비상구 근처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 (5) 자기 주위는 자기가 정리 정돈한다.



## 라. 작업시 복장

- (1) 작업의 유해위험성에 따라 규정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2) 아무리 무덥거나 습한 장소에서도 반나는 금지하여야 한다.
- (3) 복장은 몸에 알맞은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주머니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
- (4) 작업복의 소매와 바지의 단추를 풀면 안 되며 상의 옷자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서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 (5) 수건을 허리에 차거나 어깨나 목에 걸지 않도록 한다.
- (6) 오손된 작업복이나 지나치게 기름이 묻은 작업복은 착용할 수 없다.
- (7) 신발은 가죽제품으로 만든 튼튼한 안전화를 착용하여 물체가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예리한 못이나 쇠붙이에 찔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8) 장갑은 작업용도에 따라 적합한 것을 착용하며 회전체 작업 시 면장갑착용을 금지한다.

## 마. 작업장 통행의 안전

- (1)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통행한다.
- (2)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서는 안된다.
- (3) 자재 위에 앉거나 그 위를 걸지 않는다.
- (4) 통로나 궤도를 건널 때는 주위를 잘 살핀다.
- (5) 문은 조용히 열고 닫는다.
- (6) 양중기 작업 근처 등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 (7) 보행 중에는 발 밑이나 주위의 상황 또는 작업에 유의 한다.
- (8) 좌·우측 통행 규칙을 지키고 짐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비켜준다.
- (9) 금지된 장소를 지나거나 빨리가기 위해 위험한 장소를 횡단하지 않는다.
- (10)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곳을 피하거나 부득히 한 경우 주의하여 지나간다.



## 바. 통로의 안전설치 및 사용 기본요건(안전보건공단 stteet형 자료 2009-S-682)

- (1)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 (2)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를 표시할 것(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 표시)
- (3)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
- (4)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할 것

※ 갱도 또는 지하실 등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 시 제외

- (5) 통로 설치 시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전도 위험이 없을 것
- (6) 통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을 것
- (7)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할 것

※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시 제외



## 4. 기계·설비 배치의 안전

### 가. 기계설비의 효율적 배치단계

건물과 기계의 배치는 동선의 최소화로 안전과 생산능률을 극대화

제1단계: 지역 배치 ⇒ 제2단계: 건물 배치 ⇒ 제3단계: 기계설비 배치

### 나. 기계설비 배치 시 유의 사항

- (1) 소음이 나는 기계를 배치할 때는 기계를 분리하거나 방음시설 내부에 배치한다.
- (2) 회전속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심한 진동에 의한 재해를 방지한다.
- (3) 공작물의 단부에 있는 예리한 돌기가 통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작물을 배치한다.
- (4) 고온물체를 취급·가공하는 공장에서는 온도 상태에 알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5) 회전부분은 통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어·벨브·체인 등에 덮개를 씌운다.
- (6) 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위치를 설정한다.
- (7) 공장내외에는 안전통로를 설정하고 기계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둔다.
- (8) 원재료나 제품운반구의 보관장소는 충분히 설정하고 표시한다.
- (9) 사용중에 보수점검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 후 확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5. 안전한 작업방법

작업현장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방법을 배워 실천하고, 규칙적인 생활태도와 전심전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 (1) 작업자 임의로 방호장치를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방호장치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수리 후에는 즉시 원래의 장소에 부착한다.
- (3) 작업전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4)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호방법과 신호자를 지정한다.
- (5)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해진 대로 올바르게 작업을 한다.
- (6) 작업장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한다.
- (7) 자기담당 이외의 기계는 조작하거나 손대지 아니한다.
- (8) 정전이 되면 먼저 스위치를 차단한다.
- (9)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한다.
- (10) 중량물 운반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 한다.
- (11) 설비점검·이물질제거 등의 작업시 설비전원을 차단하고 표찰부착 및 잠금장치를 한다.
- (12) 복장을 단정히 하고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13) 작업 경험이 없거나 무리한 작업이 있을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 (14) 드릴 등 회전체 작업 시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 (15) 기계기구·설비 및 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 제8편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 1. 안전점검 이란?

안전점검이란 여러분이 작업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제거시키는 활동으로서 현장에서 기계설비 등을 보면서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점검을 반복하여 실시하게 되면 안전점검활동이 정착하게 되며 직장의 안전수준도 높아지고 또한 생산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이때 안전점검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재확인함으로써 신선한 활력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 2. 안전점검 실시방법

안전점검은 실시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가. 외관점검

기계·설비의 적정한 배치, 설치상태, 변형, 균열, 손상, 부식 등의 유무를 시각 및 촉각에 의해 조사한다.

#### 나. 기능점검

V-벨트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본다든가 전동기를 가동시켜 그 회전상황을 살펴보는 등 과 같이 간단한 조작을 행하여 대상기기의 기능이 적당한지를 확인한다.

#### 다. 작동점검

안전장치나 누전 차단장치 등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 작동시켜 작동상황이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 라. 종합점검

정해진 점검기준에 의해 측정하여 검사하고 또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운전시험을 행하여 그 기계설비의 종합적인 기능을 확인한다.



### 3. 안전점검 시 주의사항

가. 티끌,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설비를 장시간 방치하면 안전장치, 제어장치, 조작기구에 지장을 가져오는 수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털어내고 청소를 한다.

나. 캡, 볼트 등을 열거나 잠글 때 해머로 두들기거나 끌로 긁으면 안되며 반드시 소정의 공구를 사용한다.

다. 용기의 내용물을 점검할 때는 용기 내의 잔압에 주의하고, 잔압을 제거한 후에 점검을 실시한다.

라. 절연시험 등의 검사를 할 때 비가 내려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점검을 연기한다.

## 4. 안전순찰 점검표

구 분	점 검 항 목
1. 정리, 정돈,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및 정리, 정돈, 청소 상태는?</li> <li>○ 공구, 기구의 정리, 정돈 상태는?</li> <li>○ 불용품, 폐품 등의 처리상태는?</li> <li>○ 제품, 반제품, 원료 등의 적재 및 보관 상태는?</li> </ul>
2. 보호구의 착용, 작업복 및 작업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li> <li>○ 작업복은 규정대로 입고 있는가(“더러움이나 떨어진 것”)?</li> <li>○ 작업상태는 좋으며 불안정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가?</li> <li>○ 장갑을 사용금지 작업에서 착용하고 있지 않은가?</li> </ul>
3. 기계장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의 청소나 정비 상태는 좋은가?</li> <li>○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않았는가?</li> <li>○ 기계의 회전부분에 접촉의 위험은 없는가?</li> <li>○ 표시는 정확하게 게시하고 있는가?</li> <li>○ 표시의 파손이나 더러운 곳은 없는가?</li> </ul>
4. 전기설비,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용접용 배선설비의 상태는 좋은가?</li> <li>○ 분전함 및 전기배선 상태는 좋은가?</li> <li>○ 조명, 채광의 상태는 좋은가?</li> <li>○ 벽과 천장에 불용물이나 파손은 없는가?</li> </ul>

## 5. 각 설비별 점검 (Check Point)

## 가. 사무실의 점검요령

## (1) 계단 Check Point

- 계단에 물건이 놓여 있지 않는가?
- 기름, 물, 모래가 쏟아져 미끄럽지 않는가?
- 측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 조명은 적당 한가?
-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르내리지는 않는가?
- 양손에 물건을 들고 발 밑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르내리지 않는가?
- 뒷꿈치가 높은 신을 신고 있지 않는가?

## (2) 바닥위, 창가, 벽면 Check Point

- 바닥위의 정리·정돈·청소·청결은 잘되어 있으며 쓰레기나 먼지가 쌓여 있지 않는가?
- 불안정한 전원코드는 없는가?
-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의자나 쓰레기통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 서류함의 정리·정돈·청소·청결은 잘 되어 있으며 그 위에 불안정한 상태로 물건이 놓여 있지 않는가?
- 창가에 밖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태로 물건이 놓여있지 않는가?
- 창가나 벽쪽에 불안정하게 물품이 쌓여있지 않는가?

**(3) 출입구 통로 Check Point**

- 출입구의 넓이는 충분하며 출입구 가까이 물건이 놓여 있지 않는가?
- 출입문에 '미시오', '당기시오'의 표시가 있는가?
- 투명한 유리문은 눈 높이의 위치에 충돌방지표시가 있는가?
- 도로는 평탄하고 요철은 없는가?
- 통로 위에 장애물, 기름, 물이 흩어져 미끄럽지 않는가?

**(4) 방재설비와 장치 Check Point**

- 방화설비의 점검·정비는 양호하며 취급자는 명시되어 있는가?
- 비상구나 피난구 등의 표시는 알기 쉽게 설치되어 있는가?
-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등 소방설비 앞에 물건이 놓여있지 않는가?
- 가스렌지의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는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가?

**나. 작업장 점검요령****(1) 작업장 바닥 Check Point**

- 불필요한 물건은 놓여있지 않는가?
- 요철이 있지 않는가?
- 기름이나 물은 흐르지 않는가?
- 코드나 호스, 배관 등이 불안전하지는 않는가?
- 치공구, 작업용구, 청소용구 등은 소정의 장소에 사용하기 쉽게 준비되어 있는가?
- 폐품이나 찌꺼기 등은 내용물이 표시된 적절한 용기에 담겨 지정된 장소에 버려지고 있으며 혹시 폐품이나 찌꺼기가 지나치게 쌓여있지는 않는가?
- 유해·위험한 물질은 지정장소의 전용용기에 담겨져 있는가?
- 전원스위치, 소화기, 방화설비, 비상구 등의 앞에 물건이 놓여있지 않는가?
- 청소는 잘 되어 있으며 쓰레기, 먼지, 찌꺼기가 쌓여있지 않는가?

**(2) 통로 Check Point**

- 폭 80cm 이상의 안전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가?
- 현선, 목책, 철책 등으로 작업장소가 구별되어 있는가?
-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 요철, 부분적 경사 등 불안전한 상태는 없는가?
- 기름이나 물로 더럽혀져 있지 않는가?
- 통로에 불안전한 코드나 호스, 배관 등이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완전히 덮여 있는가?
- 출입구의 넓이는 충분하며 방해물은 없는가?

**(3) 원재료, 반제품 Check Point**

- 선반, 상자에 적절하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운반이 가능한 통로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 모양이나 중량에 맞는 높이, 배열 등의 순서에 의해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쌓여 있는가?

**(4) 쓰레기, 먼지, 찌꺼기 Check Point**

- 청소가 안되어 쓰레기, 먼지, 찌꺼기가 쌓여있지 않는가?
- 기계설비의 주위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가?
- 폐품이나 오물 등은 버릴 장소가 지정되어 내용물이 표시된 적절한 용기에 담겨져 있으며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지는 않는가?
- 폐품, 오물을 버리는 곳의 정리·정돈·청소·청결 상태는 양호한가?
- 청소용구는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되어 있는가?

**(5) 작업복 Check Point**

- 너무 크거나 길지는 않으며 찢어지거나 터져있지 않는가?
- 기름투성이거나 약품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는가?
- 목에 감긴 수건 등이 작업복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가?
- 소매나 바지끝을 접어 올리지는 않았으며 모자는 반듯하게 썼는가?
- 장갑착용 금지작업(회전체 작업)시 장갑을 끼지는 않는가?
- 신발은 미끄럽지 않으며 발끝은 보호되어 있는가?
- 호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나 뾰족한 물건을 넣고 있지 않으며 또한 유해한 물질을 호주머니에 넣지 않는가?
- 발화성, 폭발성, 유독성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소매를 접어 분진이 쌓이지 않으며 또한 호주머니가 있는 작업복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6) 보호구 Check Point**

- 보호구는 정해진 보관장소에 작업에 적합한 종류가 비치되었으며 바르게 사용하는가?
- 인원수에 비하여 보호구의 수량이 부족하지 않는가?
- 파손되거나 지나치게 더럽지는 않으며 방독마스크 등의 교환부품은 준비되어 있는가?
- 책임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는가?
- 사용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명시되어 있는가?
- 작업현장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 긴급시 사용할 보호구는 품명을 기입한 전용용기에 수납되어 정기적인 점검이 되고 있으며, 보관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보관장소 앞에 다른 물건이 놓여있지 않는가?

**(7) 수공구 Check Point**

- 작업에 적절한 종류나 크기의 수공구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점검정비는 양호하며 파손이나 마모된 것은 없는가?
- 일정한 장소에 사용하기 쉽도록 정돈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끝이 뾰족한 날을 가진 공구는 끝에 덮개가 씌워 있는가?
- 그라인더의 슛돌은 파손되거나 틈이 생겨 비틀어지지 않도록 보관상자, 선반등에 보관되어 있는가?
- 슛돌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가?
- 수공구는 끝이 뾰족한 물건 옆이나 위험하게 움직이는 부분 근처에 놓여 있지 않는가?
- 높은 곳에서 낙하할 위험이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놓여 있지 않는가?
- 계단, 통로, 작업장 바닥에 수공구가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 불꽃으로 인하여 점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베릴륨이나 동의 합금제와 같이 불꽃이 생기지 않는 수공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8) 위험물 Check Point****(가) 유기용제 Check Point**

-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 보관장소는 표시되어 있는가?
- 통풍과 환기는 잘 되는가?
- 용기는 내용물이 명시되어 있는가?
- 덮개를 씌워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돈하고 있는가?
- 인화성 용제의 보관장소에 화기나 비방폭구조의 전기 기계·기구, 가연물질은 없는가?
- 유기용제가 흐르지는 않는가?
- 인화성 물질은 불연성 격납관에 보관되어 있는가?
- 사용장소의 환기는 잘 되어 있으며 국소배기장치나 방독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 유기용제보관 용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
- 인화성 용제의 사용장소에 화기는 없으며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가?
- 사용장소의 정리·정돈·청소·청결은 양호한가?
- 용기는 덮개를 덮어 증발을 방지하였는가?
- 눈을 씻는 장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 분진 Check Point**

-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의 정리·정돈·청소·청결은 잘 되어 있는가?
- 바닥에 분진이 쌓여 있지는 않는가?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였으며 환기는 잘 되고 있는가?
- 방진마스크는 비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정비는 잘 되었으며 더럽지는 않는가?
- 가연성분진이 떠돌아다니는 곳에 화기는 없으며 점화원이 되는 전기기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 작업복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 유독성, 폭발성의 분진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복의 주머니, 옷깃을 접은 곳 등에 분진이 쌓이는 곳은 없는가?
- 눈을 씻는 장치, 샤워시설은 되어 있는가?

**(다) 가스봄베 Check Point**

- 봄베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봄베는 세워서 보관하였으며 또한 적절한 전도 방지대책이 되어 있는가?
- 밸브에 보호캡을 부착하였는가?
- 봄베를 놓아 둔 장소는 40℃ 이하로 유지되어 있으며 또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인가?
- 가연성 가스, 산소 등의 용기 저장소에는 화기나 그 밖의 점화원인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없는가?
- 저장장소에 불에 타기 쉬운 것이나 부식성의 물건은 없으며 또한 전기기기나 배선 같이 점화원이 될 위험이 있는 것은 없는가?
- 산소용기가 유지류나 기름걸레와 같이 놓여있지 않는가?
- 빈 용기에는 “다 썼음”, “비어있음”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가?
- 아세틸렌의 용기는 비어있는 것이라도 세워 놓았으며 또한 전도, 전락방지 시설은 되어 있는가?
-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비바람이 내리치는 곳에 보관되어 있지는 않는가?

**(9) 기계설비 Check Point**

- 기계날 끝이 회전하거나 또는 왕복운동을 하는 구동부나 가공물 근처에 치공구나 작업용구, 재료 등이 놓여 있지 않는가?
- 기계의 일부나 가공물에 물건이 놓여 있지 않는가?
- 치공구나 작업용구는 필요한 종류의 것을 갖추어 안전한 장소에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분하여 놓여 두었으며 작업대 위에 불안정한 상태로 놓여져 있지는 않는가?
- 칩이나 절삭유가 기계 주위에 산재해 있지 않는가?
- 기계의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조작스위치나 게이지가 더러워져 보이지 않는가?
- 국부조명이 오염되어 어둡지 않는가?
- 절삭유나 냉각수의 증발이 심하지 않는가?
- 기계 주위의 정리·정돈·청소·청결은 잘 되어 있는가?
- 전원코드나 공기호스가 발에 걸릴 염려는 없는가?
- 작업용 발판의 파손 및 요철, 틈이 있거나 미끄러질 위험은 없는가?
- 작업복은 단정하고 깨끗한 것을 입고 있는가?
- 필요한 보호기구를 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 회전하는 날이 있는 기계를 취급할 때 장갑을 끼고 있지 않는가?

**(10) 들어올리는 작업 Check Point**

- 들어올리는 작업의 안전한 기본 동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들어올리는 물건의 중량, 형상에 알맞는 와이어로프, 훅크, 대는 물건, 침재 등을 소정의 보관장소에 비치하고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 내리는 장소, 운반경로 앞에 장애물은 없으며 또 주변의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가?
- 물건을 들어올리고 내리며 짐을 유도할 때, 짐이 흔들려 떨어져도 피해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는가?
- 짐을 내릴 때 손이 끼이지 않게 안전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가?
- 작업종료 후 사용한 기구나 대는 물건, 침재 등이 지정된 장소에 수납되고, 잘정돈 되어 있는가?

**(11) 취급운반작업 Check Point**

- 작업장내의 정리·정돈·청소·청결은 잘 되어 있는가?
- 운반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 바닥에 기름이나 물이 흘러서 미끄럽거나 장애물 등이 발에 채이지는 않는가?
- 조명, 채광은 적절한가?
- 짐을 쌓아 놓은 상태는 좋은가?
- 짐은 정돈되어 놓여 있으며 또 짐과 짐의 간격이 충분하고 출입이 용이한가?
- 작은 물건을 용기에 넣어 수납하고 있는가?
- 대차, 손수레 등의 운반용구나 쇠갈고리, 지렛대와 같은 보조구는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정해진 장소에 수납하고 있는가?
- 중량물 취급공정 인근에 중량물무게중심표지판을 부착 하였는가?
- 중량물운반 시 올바른 자세(허리를 곧게 펴고)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실시 하는가?
- 선반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짐을 출납할 때 사용되는 안전한 발판, 그 밖의 승강 기구는 정비된 상태로 소정의 장소에 놓여 있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가?
- 위험, 유해물 또는 위험성과 유해성을 막는 수단을 강구하여 안전한 운반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필요한 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2021-사업총괄본부-706

안전은 권리입니다

# 작은 설비에 기여도, 낮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 ☀️ 제조업에서 사망한 10명 중 5명은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

\* 최근 5년간 1주일에 2명씩, 총 520명이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

지금 바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 ☀️ 재해 사례

끼임 재해	<p>1 작동하고 있는 기계를 청소하다 가슴이 끼여 사망</p>	<p>2 움직이는 설비에 작업복이 걸린 후 머리가 끼여 사망</p>	<p>3 제품 검사 중 산업용 로봇과 제품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p>
	<p>1 1.2m 높이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p>	<p>2 1.5m 높이 자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p>	<p>3 사다리로 내려가다 2.4m에서 떨어져 사망</p>
	추락 재해		

### ☀️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할 사항

<p><b>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작업</b></p> <p>① 점검 수리 중 전원 차단 ② 스위치에 잠금장치 및 표시판 설치 ③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p>	<p><b>끼일 수 있는 곳 방호조치</b></p> <p>① 동력기계, 회전축 등에 덮개 등 설치 ② 방호장치 해체 금지 ③ 동작중인 기계에 직접 접촉 금지</p>	<p><b>떨어질 수 있는 곳 안전조치</b></p> <p>①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 안전난간 설치 ② 개구부 덮개 설치 ③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p>	<p><b>개인보호구 착용</b></p> <p>① 안전모: 추락·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② 안전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③ 안전화: 끼임, 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p>
---	---	---	---

콘텐츠 링크 ※자료를 클릭하면 홈페이지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안전보건자료실 검색 '끼임' 또는 '추락' 또는 'VR' 등 입력  
포털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 입력 또는 주소창에 <https://www.kosha.or.kr> 입력



## 끼임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사업장명 :
- 점검일자 :
- 점검자명 :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경우 관련 인증·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2	안전인증·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방호장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 해제하거나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가?		
4	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에 대한 방지장치(덮개, 울 등 설치)는 적절한가?		
5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였는가?		
6	사용 중인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정비 작업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div style="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5px; margin-top: 5px;"> <b>대상작업</b>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시  <b>조치절차</b> ① 해당 설비 등의 운전정지                      ②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③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div>		
7	기계·기구 또는 설비 사용 중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8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갖춘 지게차를 자격 보유자가 조종하는가?		
9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 추락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사업장명 :
- 점검일자 :
- 점검자명 :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바닥면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튼튼하게 설치하였는가?		
4	안전난간 부착이 곤란한 경우(철골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주요 이동통로)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5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시작 전 반드시 점검하는가?		
6	선라이트,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폭 30cm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있는가?		
7	달리게 작업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 ① 안전대 및 수직 구명줄 설치 ② 작업용 로프 결속 및 고정부 상태 ③ 로프 파손 및 접촉부 마모상태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 제9편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1. 정리정돈의 이해

#### 가. 정리정돈의 의의

안전은 정리·정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리·정돈과 사고 예방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리·정돈이라 하면 단지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한 장소에 치워두고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안전상의 개념으로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 (1) 정리란 필요한 물품과 필요없는 물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것을 정비해 두고 필요 없는 물품은 작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두는 것을 말한다.

- 작업을 하다보면 잔재나 불량품 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쌓이게 되며 필요없는 물품은 현장의 공간을 좁게 하고 생산에도 방해가 되며 작업능률을 약화시킨다.
- 사용하는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은 즉시 폐기 처분한다.



- (2) 정돈이란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배치해 놓은 것을 말한다.

- 필요한 것은 정돈하여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장소에서 안전한 상태로 깨끗하게 수납하여 보관한다.
- 무엇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용이하게 식별표시를 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별로 보관한다.





## 2. 작업장에서의 정리정돈 실천방법

### 가. 전도의 방지(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작업장의 청결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 다. 원자재나 반제품 저장장소 지정

원자재와 반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놓은 장소와 쌓을 장소를 지정하여 출입하기가 쉽게 한다.

### 라. 쓰레기, 먼지, 찌꺼기의 추방

작업을 하다 보면 쓰레기, 먼지, 기름 찌꺼기 등이 쌓이거나 고이기 쉬워 생각지도 않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를 깨끗이 하여 청결한 작업장을 만든다.



### 마. 기계설비 정리정돈

기계의 구동부는 큰 힘으로 왕복 또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기체 밖으로 튀어나와 흔들리는 것도 있으므로 치공구나 계측기, 재료 등을 넣어두는 서랍장이나 작업대 등을 구동부에 접근시켜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다.

절삭유의 비산, 절삭부에서 발생하는 흄, 기름 누출, 누수 등으로 기계 자체가 더러워지며 주위가 지저분하게 되므로 항상 기계와 그 근처를 청소한다.

### 바. 전기설비

수전설비 둘레를 싸고 있는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충전부 가까이에 물건을 놓으면, 몸에 닿게 되어 감전이 되거나 물건이 닿으면 단락을 일으켜 화상이나 정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전기설비 주변을 정비한다.

전기설비는 먼지, 쓰레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접점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단락, 발열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자주 청소하고 또한 스위치박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어 두지 않는다.

콘센트에 접속하여 바닥위에 합쳐진 공구코드가 공간을 가로질러 가면 통행 중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정리하여 지정된 곳에 보관한다.

### 사. 수공구 정리정돈

수공구를 사용하는 곳은 특히, 발 밑을 정리하여 작업위치 선정을 잘 해야 한다.

작업에 필요한 수공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구실이나 공구함을 준비하여 필요한 종류와 크기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아. 고소작업 시 정리정돈

필요한 물건은 안전하게 놓아두는 장소를 지정하여, 낙하하지 않도록 하며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불필요한 남은 재료는 방치하지 말고 빨리 아래로 내린다.

출입금지구역 안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위험한 장소에서 선반, 로프 등을 마련하여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

자재나 남은 재료를 놓아둘 장소는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작업이 끝났을 때는 불필요한 기자재, 남은 재료 등의 철거를 완전히 한 후 청소를 하며 사용한 기재나 수공구의 수량을 확인하고, 점검정비를 한다.

물건을 올리는 장소, 개구부, 피트 작업의 필요상 덮개 등을 개장한 것은 추락방지 조치를 확실히 복원한다.

## 자. 위험물 정리정돈

### (1) 가스용기

위험·유해 가스가 고압으로 충전된 철강제는 중량물이므로, 안전하게 배치하여 저장·배치해야 한다.

저장 장소에는 종류별로 구분하되 충전된 것과 안된 것으로 구분하여 쓰러지지 않게 한다.

유지류에 산소가 닿으면 폭발적인 산화반응(연소)을 일으키므로 산소는 가연성 가스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의 온도는 40℃를 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게 한다.

저장소 주위에서는 흡연이나 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2) 유기용제

유기용제의 보관은 용기에 내용을 명시하고 인화성인가 불연성인가를 표시해야 한다.

유기용제가 증발하면 화재, 중독, 산소결핍이 되기 때문에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막아 보관한다.

보관, 사용장소에서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흐르면 곧바로 제거하도록 한다.

사용장소는 환기를 철저히 하고,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며 방독마스크도 착용한다.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화기를 엄금한다.



### (3) 약품

산, 알카리, 기타의 약품에는 독성이 강한 것들이 많으며 특히 강한 산이나 강한 알카리는 인체에 심한 상처를 일으키므로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약품용기는 꼭 물질명을 표시하고 위험 특성에 맞는 전용 선반이나 상자에 보관하고 산은 합성수지 제품과 같이 부식하지 않는 상자나 접시에 보관한다.

보호장비(안전장갑, 고글형보안경 등)를 정비하여 두고 취급 시 꼭 착용한다.

### 3. 정리정돈의 효과

#### 가. 낭비를 줄임으로서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된다.

- 재고가 장기간 쌓여있는 낭비가 제거 된다.
- 재고 보관에 필요한 장소(선반, 캐비닛 등 설치 장소)의 낭비가 제거 된다.
- 운반구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발생하는 낭비가 제거 된다.
- 찾거나 피해가거나 돌아가는 등의 불필요한 행위, 준비하거나 운반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없는 행위로 인한 낭비가 제거 된다.

#### 나. 안전이 향상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청소가 잘 되어 있어 위험개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자재 정리를 잘하면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통로도 정비된다.
- 자재 적치에 있어 최소량만 확보함으로 붕괴로 인한 위험, 돌출로 인한 위험, 다량 취급으로 인한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 화재 등 불의의 사고 시 정돈된 소화설비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피가 용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다. 기계·설비유지·관리가 쉬워진다.

- 청소를 잘하면 먼지나 모래 등 기계 설비에 결함을 초래하는 요소를 제거하게 되어 설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성능이 유지된다.
- 청소가 잘되면 주유 관리가 용이하고 이상부위 발견이 용이해진다.



#### 라. 품질이 좋아진다.

- 설비 및 장비의 정도가 유지되어 불량품을 생산하지 않게 되며 공정간 대기 중에 온도차이로 인한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
- 변질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품질이 향상된다.

#### 마. 생산품종 변경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금형, 치구, 공구 등이 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찾는 손실을 줄인다.
- 짧은 기간 안에 변경된 생산계획에 대처할 수 있다.
- 청결한 작업장은 생산 의욕을 높여준다.

#### 바. 즐거운 직장, 발전하는 회사가 된다.

- 청결한 작업장은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며 납기가 지연 되거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아 신용이 향상된다.
- 낭비와 고장이 없어 안전하며, 원가가 낮아지고 이윤이 증대되어 회사가 발전한다.





## 제10편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1.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시행 2020.01.16)

#### 가. 업무상 사고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이용하던중 그 시설물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나. 업무상 질병

-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3)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3.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가.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 (1)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직속 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업무 담당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평상시 비상연락망 조직)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2) 안전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회사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나. 사고발생 시 조치

- (1) 긴급처리(사업장 관계자)
  - ①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정지(전원 차단, 밸브잠금 등)
  - ② 재해자의 응급처치 및 산재지정병원 후송
  - ③ 관계자에게 통보(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고용노동부 및 경찰서(사망)에 보고)
  - ④ 2차 사고방지(현장작업 지장방지 및 근로자 동요예방 교육)
  - ⑤ 현장보존(사고조사 시 까지)
- (2) 재해조사(잠재 재해요인의 적출)
  - ① 누가 ⇨ ② 언제 ⇨ ③ 어디서 ⇨ ④ 무엇을(작업내용) ⇨ ⑤ 어떠한 상태 및 환경(상태 및 행동) ⇨ ⑥ 어떻게 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가?
- (3) 원인분석(직접원인: 인적요인, 물적요인, 간접원인: 관리적요인)
- (4) 대책수립(동종재해방지, 실천 가능한 대책), 대책실시 및 평가

## 4. 응급처치

### 가. 응급처치의 개념

응급처치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를 말하고 응급처치는 보다 나은 병원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며 적절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교통재해와 산업재해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응급 환자는 50% 정도가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환자이며 병원 도착 전에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중 50% 이상이 외상에 의한 심정지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 전 응급치료의 부재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1991년 7월부터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1994년 1월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12.31)응급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5.1.4) 등이 제정 공포되면서 응급상태의 국민건강을 국가에서 지키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

### 나. 응급처치의 필요성

응급처치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며 회복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환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또한 의학적 치료 여부에 따라 장애가 일시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있으며 응급처치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실시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본인이나 가족의 경우는 자신을 위한 일이 되므로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며 예를 들면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비록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도 실제 응급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황하게 되므로 침착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다.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는 119구급대와 부상자를 연결해 주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응급 상황을 인식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주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목격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응급상황인지(의식, 호흡 등)를 인식해야 한다.

#### (1) 응급상황을 인식하는 요건

##### (가) 청각적 요소

-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 건물이 붕괴될 때 나는 소리 등

##### (나) 시각적 요소

- 누워 있는 사람, 옆지러진 화학약품, 넘어진 상자, 정전, 연기, 불 등

##### (다) 후각적 요소

- 평상시 보다 강한 냄새, 특이한 냄새 등

## (2) 병원 후송을 위한 구급차 요청

응급 상황 시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구급차를 불러야 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주위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일반차량으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부상자 혹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자의 기도개방 호흡과 순환을 확인하는 환자평가를 하는데 환자에 대한 평가는 먼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를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 (3) 응급처치 실시

대부분의 생명 구조활동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응급조치를 즉시 취했을 경우에 효과가 가장 크다.

### 라. 상처 종류

상처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강타, 충격, 협착, 추락, 자동차 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피부가 찢겨져 피가 나거나 피부 또는 피부 아래에 조직과 혈관이 파손되어 출혈이 생기는 신체조직의 손상을 의미 한다.

### 마. 구급함 사용 및 응급처치방법

#### (1) 구급함의 보관할 내용물

- 위생기구 : 체온계, 가위, 핀셋, 설압자, 지혈대, 삼각건, 혈압계
- 위생용품 : 탄력붕대, 지혈붕대, 일반붕대, 반창고, 탈지면, 거즈
- 외 용 약 : 소독용 알콜,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바셀린, 화상약, 생리식염수
- 기 타 : 부목 및 들것

#### (2) 구급함 사용방법

- 구급함은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밝고 환한 곳에 둔다.
- 구급함의 내용물을 청결히 사용한다.
- 구급함 내용물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 내용물은 신속히 보충한다.
-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은 화상약을 비치한다.
- 구급함 옆에 부목과 들것을 준비해 두고 응급사고시를 대비한다.
- 구급함에 응급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9등 의료기관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3) 소독약 사용방법 : 소독약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한 거즈 등에 묻혀 사용.

(4) 탄력붕대 사용법 : 탄력붕대는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게 감는다.

- (5) 지혈대 사용법 :
- ① 출혈부위 위에 띠를 2번 감는다.
  - ② 띠를 묶어서 매듭을 짓고, 그 위에 막대를 놓는다.
  - ③ 막대를 매듭하고 출혈이 멈출 때까지 막대를 감는다.
  - ④ 출혈이 멈추면 막대 감는 것을 멈추고, 막대를 다시 고정한다.

(6) 각종 응급처치 방법

<b>그림으로 보는 각종 응급처치 방법</b>		
호흡이 끊어졌을 때 (인공호흡법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li> <li>② 한손으로 코를 막는다.</li> <li>③ 환자의 입을 통해 숨을 불어 넣으면서 가슴이 부푸는 것을 확인한다.</li> <li>④ 6-8초마다 인공호흡을 실시한다.</li> </ol>
맥박이 멎었을 때 (가슴압박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li> <li>②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 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 되도록 한다. ■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소아 4~5 cm)로 강하고 빠르게 규칙적으로 시행하며,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구급 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li> </ol> <p>※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함</p>
골절 되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삼각건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li> <li>② 옷 사이에 골절된 손을 넣는다.</li> <li>③ 방석 등을 감아 고정시킨다.</li> <li>④ 두 다리를 함께 묶어 고정시킨다.</li> </ol>
손이 잘렸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처에 gaze나 타월을 감아 지혈한다.</li> <li>② 잘려진 손가락이나 손을 수건으로 감아 비닐로 밀봉시킨 후 얼음물이 채워진 용기에 넣어 병원으로 가지고 간다.</li> </ol>
화학약품이 닿았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흐르는 물에 철저히 씻는다.</li> <li>②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싸서 전문인을 찾는다.</li> </ol>
화상을 입었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그림과 같이 세면기에 흐르는 물을 받아 통증이 가실 때까지 식힌다.</li> </ol> <p>* 흐르는 물에 직접 대고 식히지 말 것. (통증이 심해질 수 있음)</p> <p>* 옷을 입은 채 물에 담근다.</p>
눈에 약품 들어갔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5분정도 주전자나 호스 등으로 물을 흘려 약품을 충분히 씻어낸다.</li> <li>② 타월 등으로 눈을 보호하여 안과로 간다.</li> </ol>

## 제11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1. 물질안전보건 자료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안전보건 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모든 화학물질(단일물질, 혼합물질)에 대하여 유해 위험성 분류 및 경고 표시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는 GSH(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기준을 적용한다.

### 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이나 화학 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학적 정보,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조치요령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기록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와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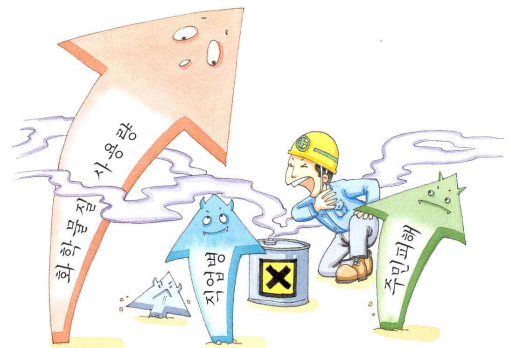


### 3.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 가. 화학물질 사용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현재 1억 1900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미국 화학초록 서비스(CAS)에 등록되었고 매일 15,000종의 화학물질이 신규로 등록되고 있으며 전세계 화학물질 생산량은 1930년도에 1백만 톤에서 2014년도에 4억 톤으로 급증하였고 약 6만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다.

2014년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업체 22,661개 사업장에서 16,150종의 화학물질 4억 9,693만톤이 유통되었다고 밝혔다(1998년 취급업체 13,052개 사업장에서 8,030종의 화학물질 1억 7,540만톤이 유통됨)



이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직업병 발생 우려가 매우 높으며, 화학물질의 폭발·화재로 인한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피해 등이 우려 되고 있는 실정이다.



## 4. 유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 가. 유해물질의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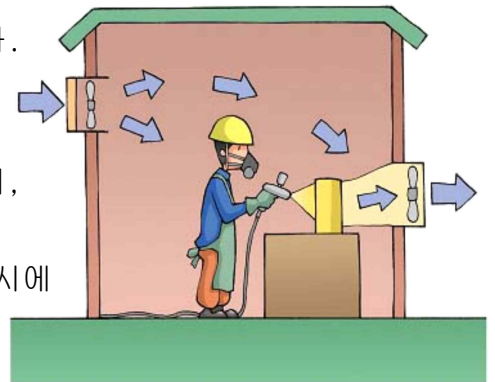
유해물은 생산현장 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쓰여지는 설비나 물품에도 들어있으며 체온계 속의 수은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늘 보아왔기 때문에 대량으로 취급하더라도 경각심 없이 직접 만지고 있다.

유해물질은 눈에 띄지않기 때문에 만성적 건강장해에도 무관심하게 되며 오염된 작업장에서 장시간 작업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유해물질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나. 유기용제취급 안전작업수칙

- (1) 유기용제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한다.
- (2) 유기용제가 갑자기 눈에 들어갔을때는 눈을 깨끗한 물로 씻는다.
- (3) 공구류는 불꽃이 튀지 않는 방폭 공구를 사용하고 공구류에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설비에 접지 한다.
- (4) 유기용제 취급 작업전 취급상의 주의 또는 경고 표지를 반드시 읽어보고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고글형보안경, 보호장갑, 불침투성보호의, 보호신발, 방독마스크 등) 한 후 작업에 임한다.
- (5) 유기용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6) 작업장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 (7) 유기용제 작업을 할 때에는 탱크, 기타 옥내작업장내 공기 중의 유기용제 농도를 측정 한다.
- (8) 유기용제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되며 모르는 사이에 몸에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작업장 안에서는 음식섭취, 음주를 하지 말고 흡연 등 일체의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 (9) 유해물질 사용 후 용기(공병포함) 마개를 견고하게 밀폐시켜 유해물질이 증발되어 작업장 내부에 체류되지 않도록 한다.
- (10) 작업중 바닥에 쏟아진 유기용제등은 즉시 제거 또는 세척하고, 유기용제 작업장소를 항상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 (11) 유기용제작업후 식사를 하는 경우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고 별도의 방에서 식사한다. 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을 실시한다.
- (12) 유기용제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 결과 의사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등 적절한 사후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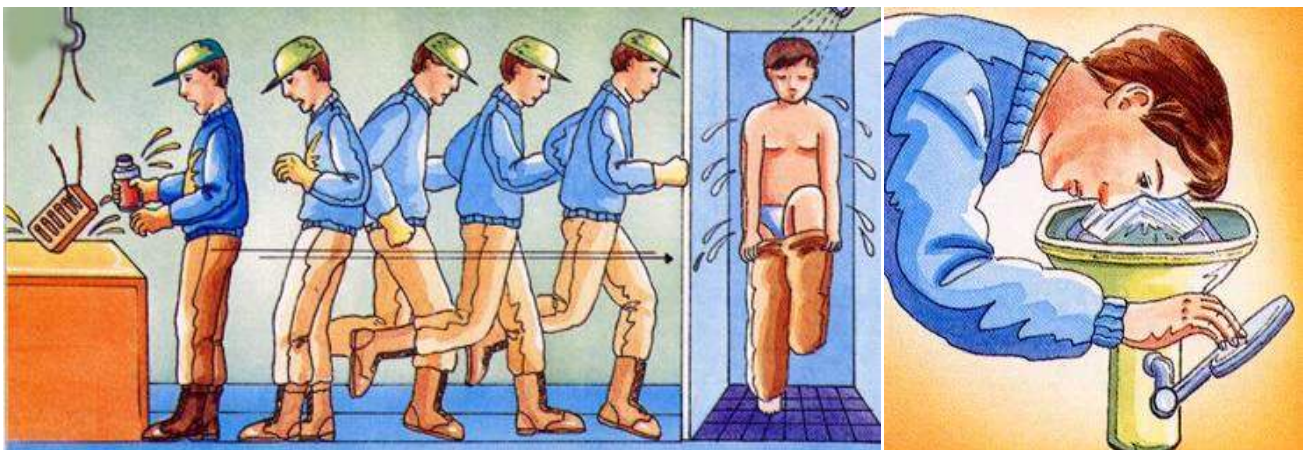


#### 다. 유기용제의 저장 및 용기처리 안전작업

- (1) 유기용제 등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보관해야 하며 약품, 식품, 사료 및 첨가제와 근접한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2) 유기용제 등을 옥내에 저장하는 때는 유기용제 등이 누출, 방출 또는 발산되지 않도록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한다.
- (3) 용기를 개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방부위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 (4) 유기용제 등을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팽창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2.5%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 밀폐하고,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장소에 저장한다.
- (5) 유기용제 등을 넣은 불박이장, 선반 등은 경사, 전도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하며 약품장등에 보관하는 경우 과산화물 등의 강산화성 물질과 일절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6) 유기용제증기는 낮은 장소에 체류하는 경향이 크므로 지하실, 피트 등에 저장하지 않는다.
- (7) 저장장소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기구 등을 설치하여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배기구는 바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 (8) 유기용제 작업장 내에서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방폭지역 내에 설치된 기계, 기구, 조명기구 등은 방폭용을 사용한다.
- (9) 가연성 유기용제 등이 들어 있던 빈용기 중에는 유기용제 증기와 공기가 혼합된 폭발성 혼합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속 등에 넣지 않는다.

#### 라. 유기용제의 피부접촉, 흡입 시 응급조치

- (1) 유기용제 등이 눈 또는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15~20분간 씻어내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2) 처음 몇 초간 눈을 씻는 일은 손상을 최소화 하고, 실명의 위기를 줄이는데 중요하다.
- (3) 눈 세척 시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 ▶ 응급처치는 어떤 물질과의 접촉 또는 사고로 다량 노출되었을 때 취하는 조치이다.



- (4) 다량 흡입하였을 때 취하는 첫 번째 조치는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 (5) 사고수습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면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 (6) 환기설비의 고장 또는 유기용제의 누출 등에 의해 급성중독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

**제12편: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2025년 2월)**

2025. 2. 3(월), 10:10경 ⇒ 대구 동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골 위에서 볼트 체결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사망 1명, 높이: 4.9m)
2025. 2. 5(수), 10:45경 ⇒ 전북 진안군 소재 골프장에서 재해자가 차량으로부터 떨어진 화물을 수거하던 중 경사로에서 차량이 밀려 내려와 부딪힘(사망 1명)
2025. 2. 5(수), 13:20경 ⇒ 충남 홍성군 소재 벌목현장에서 재해자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깔림(사망 1명)
2025. 2. 6(목), 11:24경 ⇒ 경북 경주시 소재 폐수 자원화시설 공사현장 철골 위에서 재해자가 이동 중 바닥으로 떨어짐(6.7m, 사망 1명)
2025. 2. 6(목), 13:43경 ⇒ 경남 하동군 소재 태양광 설치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위 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며 바닥으로 떨어짐(10m, 사망 1명)
2025. 2. 7(금), 15:30경 ⇒ 부산 강서구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후진 중인 지게차와 부딪힘(사망 1명)
2025. 2. 7(금), 08:03경 ⇒ 충북 괴산군 소재 제조업 사업장 입구 도로에서 경사로에 빠진 화물차 견인 작업 중 트랙터 원치의 볼트가 파단되며 인근에 있던 재해자가 맞음(사망 1명)
2025. 2. 7(금), 17:33경 ⇒ 경북 성주군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코일 인양을 위해 밴드 절단 중 넘어지는 코일에 깔림(1.8ton)(사망 1명)
2025. 2. 8(토), 11:25경 ⇒ 경기 포천시 소재 벌목현장에서 재해자가 벌목작업 중 넘어지는 벌도목에 맞음(사망 1명)
2025. 2. 11(화), 08:40경 ⇒ 충남 당진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골 설치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사망 1명, 높이 13m)
2025. 2. 14(금), 10:51경 ⇒ 부산 기장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인테리어 등 마감공정 작업 중 화재 발생(사망 6명, 부상 1명)
2025. 2. 13(목), 14:08경 ⇒ 서울 노원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골 설치작업 중 인양하던 철골 부재에 맞음(사망 1명)
2025. 2. 14(금), 09:43경 ⇒ 경북 경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수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넘어지는 지수벽에 깔림(사망 1명)
2025. 2. 14(금), 11:12경 ⇒ 경기 양주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재해자가 단부로 자재를 내리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사망 1명, 높이: 5m)
2025. 2. 16(일), 14:42경 ⇒ 경남 통영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호이스트로 철제 구조물 인양 중 넘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깔림(사망 1명)
2025. 2. 16(일), 21:22경 ⇒ 강원 삼척시 소재 역 선로에서 재해자가 모터카의 하부에서 하부 장치 점검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모터카가 움직여 모터카와 레일 사이에 끼임(사망 1명)
2025. 2. 17(월), 16:09경 ⇒ 부산 사상구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선회하는 굴착기의 후면부와 화물차량의 적재대 사이에 끼임(사망 1명)
2025. 2. 18(화), 09:20경 ⇒ 전남 담양군 소재 벌목현장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벌도목에 걸려있던 고사목이 쓰러지며 맞음(사망 1명)
2025. 2. 19(수), 11:53경 ⇒ 부산 강서구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세척 설비 점검 중 운반용 이동대차와 설비 기둥 사이에 끼임(사망 1명)



# 안전제일·품질제이·생산제삼의 유래?

지금부터 약 119년 전인 1906년 많은 회사들은 생산제일 위주로 기업을 운영하여 불량품이 발생되어 상품가치와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자 품질제일 위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도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또는 죽게 되면 개인과 가족의 심신 고통과 경제적 고통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직·간접손해보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과 인력손실 즉 고급 인력이 치료기간 중 근무를 못하는 공백 기간동안 신입사원 대체 등으로 불량품이 발생되어 생산도 품질도 저하되어 결국 회사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1906년 미국의 철강업이 불황의 늪에 처해 있을 때 미국 철강회사(U.S Steel) 게리(E.H.Gary)회장은 회사의 초기 운영방침인 생산제일주의 방침을 안전제일주의로 바꾸어 실시한 결과 재해감소,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게리회장의 실천적인 경영성과는 미국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12년 시카고에 전미안전협회가 창립되었고, 1917년에는 영국에 안전제일협회가 탄생되어(1941년에 재해방지협회, ROSPA로 개명)유럽대륙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안전제일이라는 말이 하나의 슬러건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산업재해 예방이 개인과 가족 회사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 ?

- 첫째. 개인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받는 고통 즉 재해자의 체력과 능력이 감퇴하고 심신이 고통스럽고 수입이 감소되어 금전적 고통을 받는등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고생스럽게 하는 것을 예방(가정에 행복을 유지함)
- 둘째. 회사의 일손부족 작업지연 능률감퇴 인간관계 악화 회사의 신용불량을 방지 (회사에 큰 이익을 창출하여 회사발전에 기여 함)
- 셋째. 국가적으로 아까운 인명손실 경제적손실 사회불안 방지 등으로 국제적으로 신인도를 높힘(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이바지 함)

따라서 우리 모두는 회사에 입사한 그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자신과 가족과 나아가 회사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자기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금지한다.

또한 타인에게도 위험한 행위를 가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든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작업장의 잠재위험요인인 불안전상태나 불안전행동을 제거하여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사 안전을 최우선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명심한다.

**안전제일 安全第一(국어사전): 어떤 일에 실패나 위험이 없도록 조심하여 안전을 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

# 한국기술안전 사업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안전점검 조치 등 사업주와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근로자등에 대한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 훈련 지도·조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위반시: 500만원이하과태료)

정부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직접 유자격 안전관리자 채용과 선임의 어려움 및 경영상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업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인 한국기술안전에서는 안전관리업무위탁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사업장방문 안전점검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상, 보건상 조치

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와 기술지도로 위험요인 제거

안전·보건교육 훈련실시

신규채용자·일반근로자

및 그 밖의 회사와 협의 교육

을 통한 재해예방 지식·기능·태도를 개선 안전작업유도

안전기술자료 무료제공

매월안전교육교재제공

및 각종 안전기술자료 제공

을 통한 위험관리 모델기법보급과 저비용·고효율 산재 예방기법 보급

각종 홍보자료 무료 보급

정부정책자료 보급

및 안전포스터·표어 보급

을 통한 고용노동부 최신정책과 무재해운동, CLEAN사업 등 우수안전장치, 보호장구 등 정보제공

산재예방계획·재해처리지원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산재원인분석·대책수립

을 통한 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원·작업환경개선업무지원 등 재해원인분석 대책조치로 근로자와 회사재산 보호

노동행정 등 대관업무 지원

고용노동부·안전공단 업무

및 인사·노무·소송관련등 조력

고용노동행정 관계서류 작성조력, 안전·보건관계 시설자금 무료지원·장기저리 융자안내신청외 산업재해관련 민·사상 업무 상담, 지도, 조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기술안전

K T S K O R E A T E C H N O L O G Y S A F E T Y

(상담안내 : 전화 02-453-9461~2. 453-9466 / 팩스 02-453-9480)